

보안 과제(), 일반 과제(O) / 공개(O), 비공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721000-000735-01

혁신정책 / 2022-00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23. 3.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연구개발 기간: 2022.2.11.~2023.2.10.)”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 경 재(선임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정 동 덕(연구위원)
서 지 현(연구위원)
김 희 정(연구위원)

위탁연구책임자: 최 지 선(로앤사이언스 법률사무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O],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2-8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3	100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2022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영문	2022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upport Projec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영문	Research on the reconstruction of research ethics and improvement of sanctions policy in government R&D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충로 1339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이 경 재	직위	센 터 장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312	휴대전화	-				
			전자우편	kjlee@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				
연구개발기간		2022. 2. 11. - 2023. 2. 10. (12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100,000						100,000		100,0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위탁연구개발기관		로앤사이언스 법률사무소	최지선	대표/ 변호사	*****	*****	위탁	기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김 희 정	직위		위촉연구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628	휴대전화		*****			
			전자우편	pbf1019@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일

연구책임자 : 이 경 재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로앤사이언스법률사무소 대표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연구기간	2022.02.11. - 2023.02.10.	
연구사업명	사업명	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 경 재		총 연구비	100,000 천 원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 약

1. 연구의 배경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의 중요성 강조

- 국가간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와 함께 바람직한 연구 윤리 확립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연구윤리의 범주를 확대*하고 연구기관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토록 의무 부여
 - * (기존) 연구윤리 확보 = 연구부정행위
 - (변경) 연구윤리 확보 =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전한 연구실 문화 등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22.2월)
- 이해충돌 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과의 합치성 문제*로 연구윤리 길잡이에서 제외됨에 따라 '22.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시행 시점에 맞춰 연구윤리 길잡이에 포함하여 개정 필요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정책모니터링 필요

- OECD, APEC 주요 기구 및 미국, 영국, 중국 등 외국의 경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진행
 -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거나 연구원 및 연구기관 담당자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등 연구 진실성에 대한 규범의 대상과 범위가 국가별로 다양함
 -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의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윤리 정책마련을 위한 해외 동향 조사연구 필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및 절차의 일관성·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주요 사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및 보완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연구환경의 변화,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2.2)」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에 대한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현장 연착륙을 지원하고 추가 개선사항 발굴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규정 마련 유도
 - 「혁신법」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각 기관별 자율적인 연구윤리 규정 마련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용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 안내서 제정을 위한 위탁연구 추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분야 가이드라인 발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의 합치성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 발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운영 현황조사 및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원체계·절차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윤리 길잡이의 지속적인 보완에 활용
 - 조사영역 및 항목, 정량 또는 정성적 내용에 대한 조사서 설계를 통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연구윤리 관련 자체규정 운영 현황 조사
 - 온라인(조사 링크 및 메일)을 통한 자료 접수 및 수집된 자료 분석 실시

-
-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우수사례를 추천
 -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연구윤리 교육홍보, 기타 등 분야별 조사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 처리 및 연구윤리 관련 자료조사 분석
 - 부정행위 조사·검증 등 절차 및 체계 개선방안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 주요국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발생·조치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처리절차에 대한 문헌자료 조사
 -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등 주요 연구개발 부처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결과 통보, 제보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정책동향 파악
 - OECD 등 국제 사회의 연구 윤리·연구 진실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공통 기준 관련 자료 조사
 - 글로벌 연구체계에서 연구 진실성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및 연구 진실성 확보 방안

3. 주요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및 보완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22.5)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관련 법령 해설을 부록으로 별도 편성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22.5) 책자 발간·배포

 - 연구기관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 연구윤리 전담 부서/인력, 자체 연구윤리 규정,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내용 활용 여부 등에 대한 104개 연구개발기관 현황 조사
 -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한 14개 기관, 21개 사례중에서 우수사례(5건)을 발굴하고 차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타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 운영에 참고로 활용

 - 부정행위 처리 및 연구윤리 규범 관련 자료 조사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및 절차의 일관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현황조사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경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있어 연구자 구속력 있는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를 중요시
-

요약문

<p>연구의 목적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의 개정보완 및 연구개발기관 자체 연구 연구윤리 운영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윤리 전담 조직 및 규정 보유 등 기관별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의 타기관 확산 				
<p>연구개발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22.5)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관련 법령 해설을 부록으로 별도 편성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22.5) 책자 발간·배포 ○ 연구기관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 전담 부서/인력, 자체 연구윤리 규정,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내용 활용 여부 등에 대한 104개 연구개발기관 연구윤리 담당자의 자기보고식 현황 조사 -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한 21개 사례중 5건의 우수사례 발굴 및 담당자에 대한 장관 표창 추천 ○ 부정행위 처리 및 연구윤리 규범 관련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및 절차의 일관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현황조사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규범 및 연구보안에 있어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동향 및 방안 제시 				
<p>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체계·절차,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등에 관한 연구기관별 담당자의 응답을 조사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윤리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현장 활용성 제고 ○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와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p>국문핵심어 (5개 이내)</p>	연구윤리	국가연구개발	연구부정행위	우수사례	연구문화
<p>영문핵심어 (5개 이내)</p>	Research ethics	Government R&D	Research misconduct	Best practices	Research culture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제4절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7

제2장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및 보완

제1절 추진개요	11
제2절 이해충돌 관리 분야 가이드라인 추진 기본 방향	12
1. 기본 구성	12
2. 주요 내용	13
제3절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 안내서 제정 연구	16
1.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의 개요	16
2.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29
3. 이행충돌 예방 및 관리 방안	35
4.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법령 해설	39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78

제3장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제1절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	81
1. 연구윤리 확보 지원 현황	82
2.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현황	86
제2절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	89
1. 연구윤리 우수사례 조사 개요	89
2.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심사	92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94

제4장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처리 체계 및 절차

제1절 개요	99
제2절 주요국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체계 및 절차	100
1. 미국	100
2. 독일	104
3. 호주	106
제3절 부처별 연구부정행위 처리 체계 및 절차	10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108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10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112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16

제5장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정책 동향

제1절 개요	123
제2절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통 규범	124
1. 연구진실성을 위한 세계학술대회	124
2. 유럽 아카데미 연합 (All European Academies, ALLEA)	128
3.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28
4. OECD	129
제3절 주요국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현황	132
1. 미국	132
2. 영국	138
3. 중국	139
제4절 연구윤리 주요 이슈 현황	143
1. 부실학회	143
2. 괴롭힘(갑질) 행위	145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48

제6장 결론 149

부록

1. 연구윤리 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서식	155
2. 연구윤리 우수사례 조사 서식 및 사례	171

표 목 차

〈표 2-1〉 이해충돌 길잡이 목차(안)	12
〈표 2-2〉 소속기관 및 연구자 직위에 따른 이해충돌 관련 법령 적용 대상 구분	25
〈표 2-3〉 구분 기준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가능 상황과 적용 가능 법령의 예시	32
〈표 3-1〉 연구윤리 총괄 부서 운영 여부 응답	82
〈표 3-2〉 연구윤리 업무별 전담 인원 수 응답	83
〈표 3-3〉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여부 응답	85
〈표 3-4〉 심사위원 현황	92
〈표 3-5〉 심사기준	92
〈표 3-6〉 우수사례 심사결과	93
〈표 4-1〉 NSF OIG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02
〈표 4-2〉 ORI 보고 활동을 포함한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03
〈표 4-3〉 DFG 지원금 수혜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05
〈표 4-4〉 호주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07
〈표 4-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08
〈표 4-6〉 교육부 지침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11
〈표 4-7〉 산업부 요령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14
〈표 4-8〉 주요국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대처 주체 비교	117
〈표 4-9〉 부처별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	119
〈표 4-10〉 부처별 조사위원회 구성	120
〈표 5-1〉 싱가포르 성명서 내 연구자의 책임	124
〈표 5-2〉 몬트리올 성명서 내 연구협력을 수행하는 개인과 기관 당사자의 책임	126
〈표 5-3〉 APEC의 연구 무결성을 위한 기본 원칙	129
〈표 5-4〉 OECD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무결성과 보안 강화 방안	131
〈표 5-5〉 바이든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132
〈표 5-6〉 과학적 진실성 정책 개정 시 고려사항	134
〈표 5-7〉 NSPM-33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33)의 내용	137
〈표 5-8〉 NSPM-33 시행 지침 작업 원칙	137
〈표 5-9〉 연구 보호를 위한 방법	138
〈표 5-10〉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	140
〈표 5-11〉 중국 과학기술윤리 관련 입법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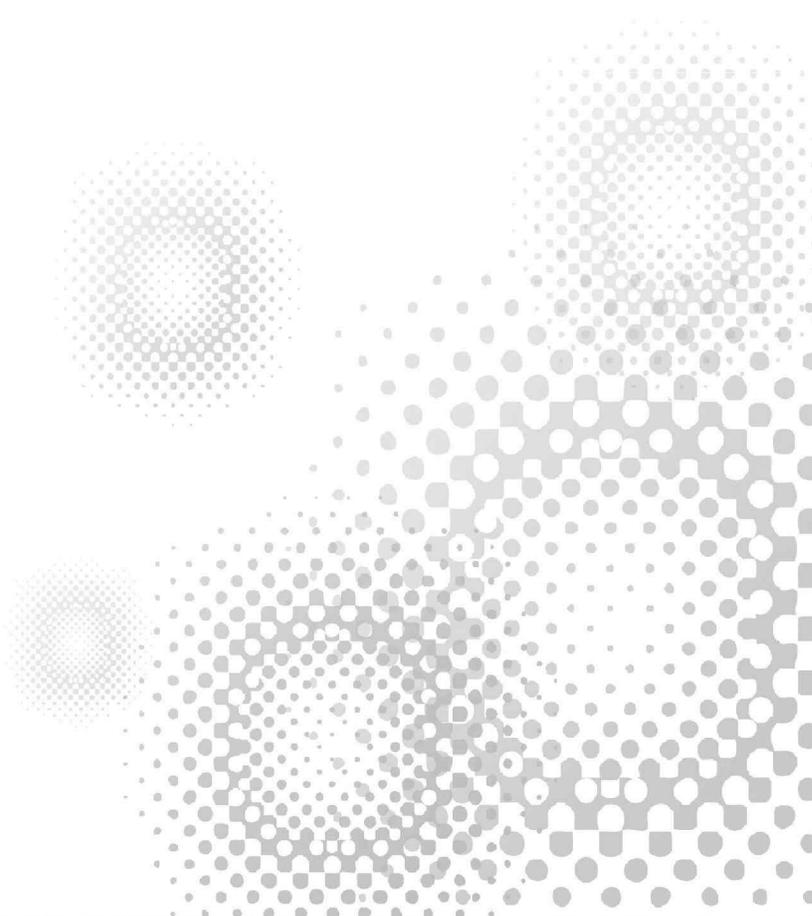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1-1] 추진체계	6
[그림 2-1] 이해충돌 관련 법령 입법 연혁	21
[그림 2-2]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절차	70
[그림 3-1] 연구윤리 총괄 부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	82
[그림 3-2] 연구윤리 업무별 부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 - 대학	82
[그림 3-3] 연구윤리 업무별 부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 - 연구기관	82
[그림 3-4] 연구윤리 업무별 전담 평균 인원 수 - 연구비 규모별 - 대학	84
[그림 3-5] 연구윤리 업무별 전담 평균 인원 수 - 연구비 규모별 - 연구기관	84
[그림 3-6]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 - 대학	85
[그림 3-7]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 - 연구기관	85
[그림 3-8] 부정행위의 범위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관련	86
[그림 3-9] 부정행위의 범위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86
[그림 3-10] 부정행위의 검증·조치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관련	87
[그림 3-11] 연구윤리 길잡이 활용했다고 응답한 기관	87
[그림 4-1] 미국의 연구진실성 정책 체계 거버넌스	100
[그림 4-2] 호주의 연구진실성 정책 체계 거버넌스	106
[그림 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109
[그림 5-1] 부실학회 관련 보도	14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 경쟁심화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의 중요성 강조

- 국가간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와 함께 바람직한 연구윤리 확립 및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 정부연구개발예산(조원) : '17(19.5) → '19(20.5) → '21(27.4) → '22(29.8)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07),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 제정 및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2) 발간·배포
 - ※ '20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총 391건으로 2017년(58건)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¹⁾
-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윤리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대응 범주를 넘어 연구 진실성 및 학문교류, 이해충돌, 건전한 연구실 문화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
 - 연구윤리는 학문적 진리 탐구를 위한 규범의 범주를 넘어 이해충돌 예방관리 등 사회적·공익적 가치 추구 영역으로까지 확대
 - 연구현장의 바람직한 연구환경 조성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자율적 윤리규정 마련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모범사례 발굴·확산 필요

■ 글로벌 연구생태계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정책동향 모니터링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및 절차의 일관성·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주요 사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 OECD, APEC 주요 기구 및 미국, 영국, 중국 등 외국의 경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진행
 - 싱가포르 성명서에는 개별 연구원의 연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성명서는 연구원 및 기관 담당자에 책임을 강조하는 등 연구 진실성에 대한 규범의 대상과 범위 등이 다양하게 제시
 -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에 따른 연구보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윤리 정책 마련을 위한 해외 동향 조사 필요

1) 연구재단(2021.4),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및 보완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연구환경의 변화,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2.2)」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혁신법」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각 기관별 자율적인 연구윤리 규정 마련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종전의 연구진실성, 연구부정 대응에 국한되었던 연구윤리 규범의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내용의 보완
 - 전문가 간담회 및 개정 수요 발굴 등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성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 2021년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연구윤리 관계법 및 지침의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항 반영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운영 현황조사 및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원체계·절차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윤리 길잡이의 지속적인 보완에 활용
 - 조사영역 및 항목, 정량 또는 정성적 내용에 대한 조사서 설계를 통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연구윤리 관련 자체규정 운영 현황 조사
 - 온라인(조사 링크 및 메일)을 통한 자료 접수 및 수집된 자료 분석 실시
-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우수 사례를 추천
 -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연구윤리 교육·홍보, 기타 등 분야별 조사
 -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사례 검토 및 평가·선정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 처리 및 연구윤리 관련 자료조사 분석

- 부정행위 조사·검증 등 절차 및 체계 개선방안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 주요국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발생·조치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문헌자료 조사
 -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등 주요 연구개발 부처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결과 통보, 제보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정책동향 파악
 - OECD 등 국제 사회의 연구윤리·연구진실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공통 기준 관련 자료 조사
 - 글로벌 연구체계에서 연구진실성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및 연구진실성 확보 방안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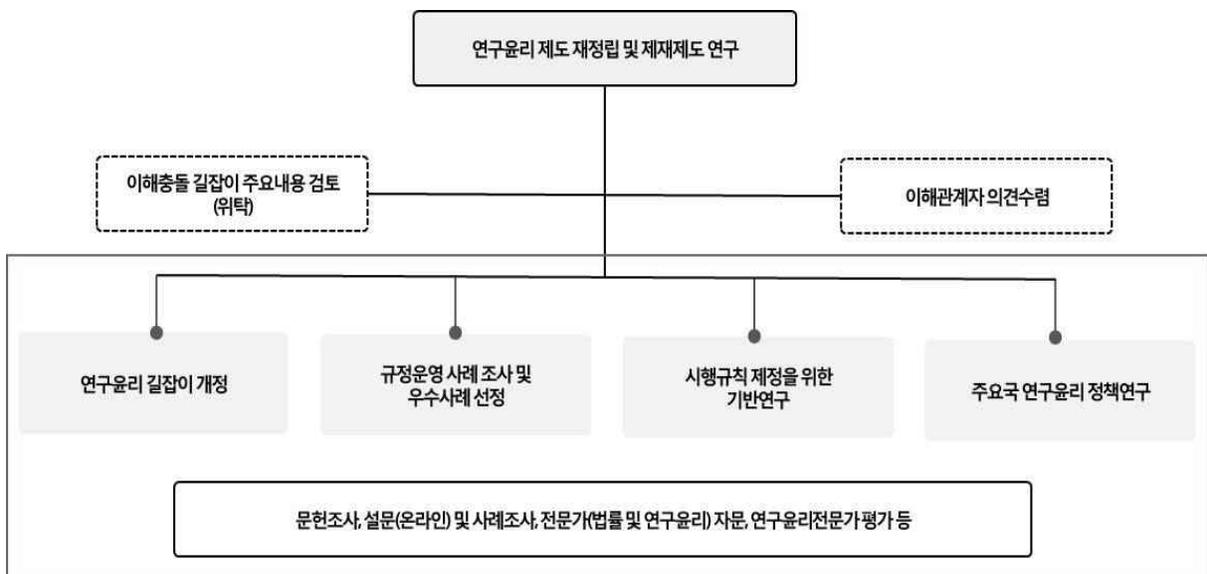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연구현장 간담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충돌 관련 전문가 자문, 위탁연구 등을 통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토론 및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 연구기관 자체규정 마련·운영 사례 수집 및 우수사례 선정

- 연구개발기관별 연구윤리 자체규정, 관리체계 등에 관한 설문조사
- 연구윤리 전문가 협의를 통한 우수사례 선정 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윤리 정책 연구

- 주요국에 대한 사례조사 및 문헌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기술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연구진실성·연구윤리 정책 현황 조사



[그림 1-1] 추진체계

제4절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활용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에 활용
- 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규 개정(안)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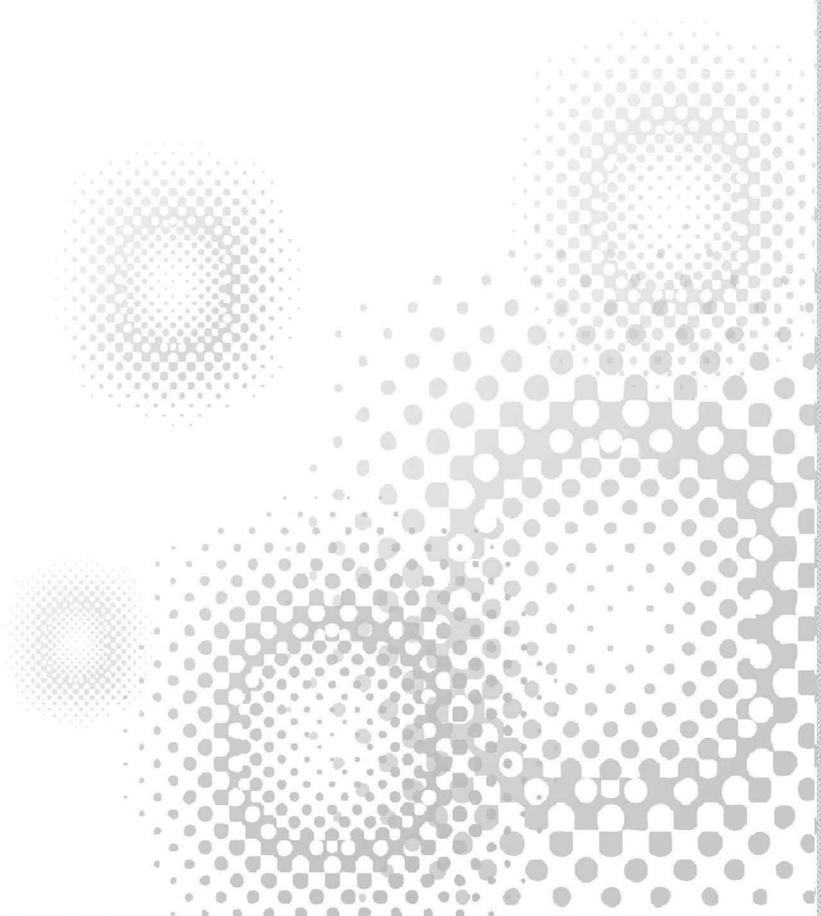
■ 기대 효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1)에 따른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규범 마련의 기반 구축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 연구윤리 길잡이 보완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자율적 연구윤리 확보문화 조성 및 국내 연구기관·연구자의 국제 경쟁력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제2장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및 보완



제1절 추진개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연구윤리의 범주를 확대*하고 연구기관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토록 의무 부여

* (기존) 연구윤리 확보 = 연구부정행위

(변경) 연구윤리 확보 =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지 않았던 건전한 연구실 문화 등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22.2월)
- 이해충돌 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과의 합치성 문제*로 연구윤리 길잡이에서 제외됨에 따라 '22.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시행 시점에 맞춰 연구윤리 길잡이에 포함하여 개정

추진 경과

-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TF 구성·운영 ('21.6월~)
-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담당자 중심으로 의견 수렴 ('21.10월~)
 - *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 과총과 공동주관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 등
- 연구윤리 길잡이 확정·배포('22.2월)
- 연구윤리 길잡이에 대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22.2월)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분야 가이드라인(길잡이) 마련 ('22.3~5월, 위탁연구 추진)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길잡이(안)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22.5월)
- 이해충돌 분야를 포함한 통합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22.5)

- 과학기술의 발전 및 연구환경 변화, 사회 인식 등을 고려하여「연구윤리 길잡이」를 지속 업데이트 필요

- 「연구윤리 길잡이」에 대한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현장 연착륙을 지원하고 추가 개선사항 발굴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규정 마련 유도

제2절 이해충돌 관리 분야 가이드라인 추진 기본 방향

1. 기본 구성

- (개요) 공공·민간부문의 현장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부분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제시
 - 이해충돌 예방 노력이 창의적 연구역량과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 제공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등 관련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국공립 대학·출연연 소속 연구자를 위해 관련 법령 내용 설명
- (내용)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의 책무에 대해 제시

〈표 2-1〉 이해충돌 길잡이 목차(안)

구 분	세부구성(안)
연구자등 이해충돌 개요	1. 배경 및 개념 2. 관련 법령 연혁 3. 연구현장 이해충돌의 특수성 4. 이해충돌 길잡이 방향성 및 목적
연구자등 이해충돌 이슈	1.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 과학기술 관련 특구 부동산 보유·신고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5.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6. 민간기관 재직자의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7. 기타 이슈
연구기관 이해충돌 이슈	1.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2.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3. 기타 이슈
이해충돌 예방·관리 절차 및 연구기관의 책무	1. 이해충돌 예방 절차 2. 이해충돌 신고처리 절차 및 이해충돌담당관 3. 기존 규정·절차(행동강령)과의 관계 4.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책무 [참고] 타 기관 규정례 및 서식례

2. 주요 내용

■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적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충돌 관리 방안 제시

- 기존에 존재하는 「공직자윤리법」 등 이해충돌 관련 복잡한 법·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관련 규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장 적용 방안 제안

■ 이해충돌의 개념

- 연구자등 및 연구지원인력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2조(정의)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연구자등 이해충돌 이슈

①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 각종 심사, 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 또한, 직무관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피 신청 가능함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연구자등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적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 시 의무

- 민간기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의 경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7조),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제14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1조) 등을 준용

■ 연구기관 이해충돌 이슈

① 계약

- 연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직 재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자와 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이해충돌 예방·관리 절차 및 연구기관의 책무

① 이해충돌담당관 지정

-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관련 교육, 신고 접수·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재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② 신고처리절차

- 누구든지 이해충돌 위반행위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3절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 안내서 제정 연구²⁾

1.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의 개요

■ 이해충돌의 개념

- 통상적으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利害衝突)³⁾은 개인이 공적(公的)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私的)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적인 업무가 훼손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해상충(利害相衝)”으로 표현되기도 함



참고

<이해충돌에 관한 다양한 정의>

-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와 사익(私益)간 충돌로 인해, 공직자의 개인 자격으로서의 이해관계(private-capacity interest)가 공적인 임무와 책임(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⁴⁾ (OECD 2005, p.13)
- 연구자의 1차적 이익(연구의 타당성 등)과 관련한 전문가적 판단이 2차적 이익(개인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부당하게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⁵⁾ (Thompson 1993, p.573)

- 법률상으로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상대적으로 재산상 이해관계와 특혜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함

2) 제3절은 본 과제 위탁과제로 수행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 안내서 제정 연구」 최종보고서* 제1장~4장의 내용을 발췌 수록하였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포함용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 안내서 제정 연구, 로앤사이언스(Law & Science) 법률사무소 (연구책임자 : 최지선)

3) “이해충돌”은 강학상 또는 관련 법령규정에 “이해상충”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 작성의 근거가 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이해 충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규정을 소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충돌”의 용어를 사용함

4) OECD 2005.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5) Thompson, Dennis F. 1993. “Understand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9: 573-6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개념을 종합해 보면, 연구개발 이해충돌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이해충돌 관련 법·규정

- 연구자등의 이해충돌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주요 주체가 대학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공직유관단체 및 대학 등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으로 규율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 대학의 경우 이미 2013년 개정된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연구윤리지침의 제정 의무에 따라 연구윤리지침의 일부로 다루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공직자윤리법」('81.12.31제정, '83.1.1.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08.2.29.폐지제정, '08.2.29시행) 및 동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부패방지법 당시 '03.2.18제정, '03.5.19.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15.3.27.제정, '16.9.28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1.5.18.제정, '22.5.19.시행 예정) 등이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등록의무자(제3조), △공직유관단체(제3조의2), △등록대상재산(제4조), △주식 거래내역의 신고(제6조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제14조의4), △주식취득의 제한(제14조의6) 등임
 - 상대적으로 임원급 공직자(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연구자가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임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798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직자가 준수할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5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제5조의3),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3조의3),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 대부분의 연구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중하는 각 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

☞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부분의 연구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중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상황에 적용되는 의무를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8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이하, 각 호 생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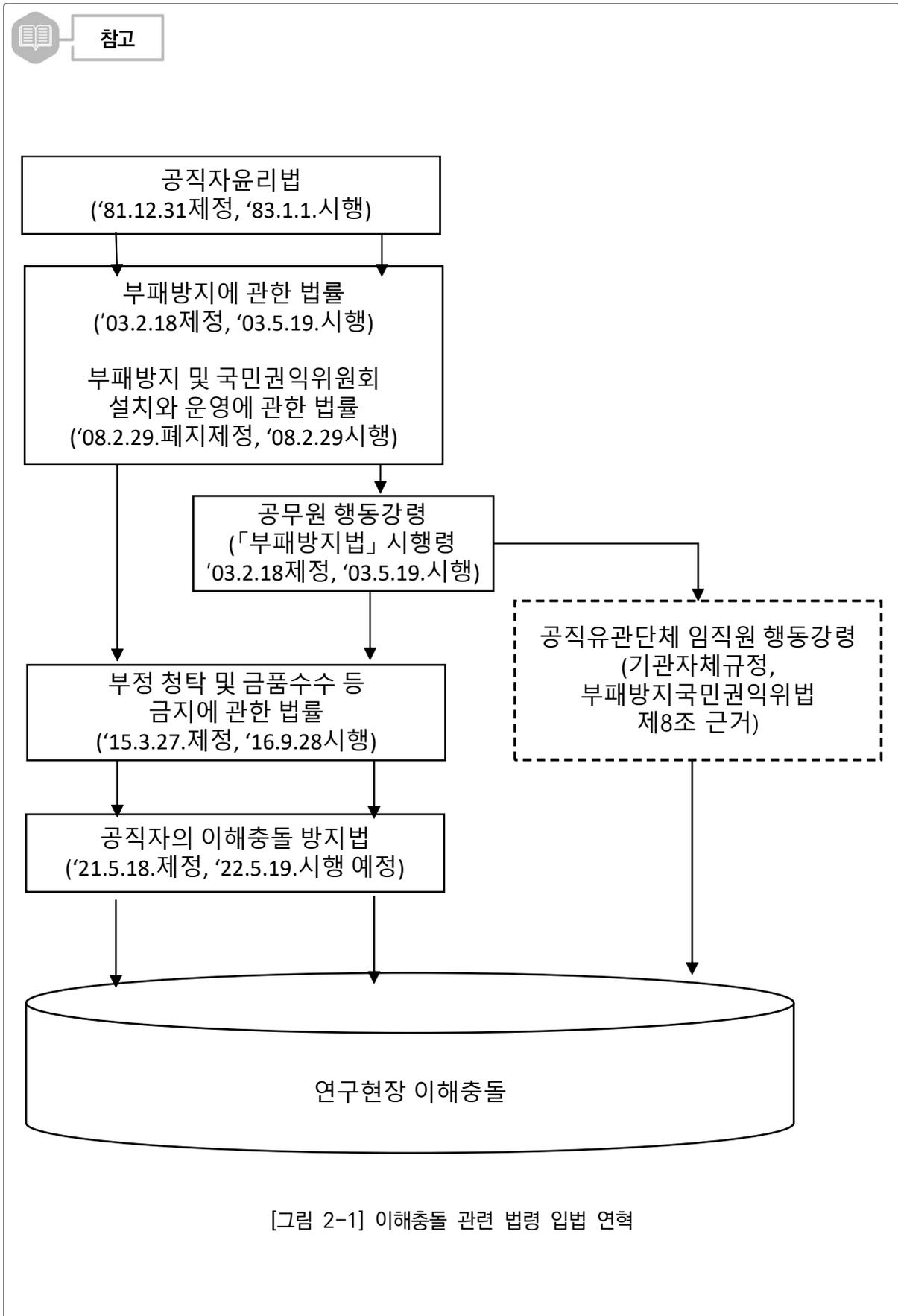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 개인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제16조) 등의 의무가 발생함
 - 공공기관은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등의 의무가 발생함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해충돌 예방·관리 규정 마련 의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모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 기관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64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참고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포함),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민간기업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수준의 강한 이해충돌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요구사항과 유사함
- **(1유형: 공직유관단체와 국·공립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 대응 규정을 거의 준용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 예방·관리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각 연구기관별로 기존 연구윤리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2유형: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는 이해충돌 관련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받는 점은 동일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음
- 사립대학교는 이해충돌의 측면에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는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법령에는 포함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닐 것임
- **(3유형: 민간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직자 수준의 이해충돌을 의무화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적으로 준용하도록 할 수는 없음
- 다만, 민간기관 재직자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의무 등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는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한편, 민간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강화된 이해충돌 대응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 대응 규정을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포함)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민간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윤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수준의 이해충돌 대응을 해야 하는 기관)	○	○		

※ 인사혁신처는 2022년 1월에 1,352개의 공직유관단체 명단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이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 1월에 지정·고시한 350개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유형별 예시규정은 본 연구윤리길잡이 제8장을 참조

- 공공연구기관은 본 이해충돌 길잡이에서 소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이해충돌 이슈를 상당부분 포괄하는 “행동강령” 규정을 운영중임
 - 이해충돌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의무가 있는 공공연구기관·연구자 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4장의 [별첨]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해설에서 안내함
-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본 길잡이에서 소개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① 연구윤리 규정에는 연구자·연구개발 관련 이해충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② 이미 운영중인 “행동강령” 등 기존의 기관 자체규정·지침등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민간연구기관은 대부분 공직유관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유관단체 및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할 의무는 없음
 -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행동강령”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필수적인 사항만 내부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과 공공연구기관에 준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대응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것임 (제8장의 예시규정-민간연구기관 규정사례 (1), (2) 참조)



참고

〈이해충돌 관련 법령의 소속기관별 연구자 적용 범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상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다양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국·공립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유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됨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대학의 교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됨

〈표 2-2〉 소속기관 및 연구자 직위에 따른 이해충돌 관련 법령 적용 대상 구분

구분	적용 대상		소속기관별 연구자 해당 여부
	공공기관	공직자	
공직자 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 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중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공립대학/사립대학 등의 임원급 연구자등만 해당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구분	적용 대상		소속기관별 연구자 해당 여부
	공공기관	공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p>“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p> <p>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p> <p>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p> <p>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제2조제1호)</p>	<p>“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p> <p>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제2조제3호)</p>	<p>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에 소속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해당됨</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p>“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p> <p>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제2조제1호)</p>	<p>“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p> <p>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p> <p>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p> <p>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제2조제2호)</p>	<p>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에 소속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해당됨</p>

제2장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및 보완

구분	적용 대상		소속기관별 연구자 해당 여부
	공공기관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p>“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p> <p>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p> <p>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p> <p>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p> <p>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p> <p>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제2조제1호)</p>	<p>“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 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p> <p>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p> <p>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2조제2호)</p>	<p>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공립대학/사립대학 등에 소속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해당됨 (사립대학 재직자 제외)</p>

■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의 기본 원칙과 목적

- 우리나라 연구개발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 이해충돌 길잡이는 공공·민간부문의 현장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관련 법령을 쉽게 소개하는 한편, 이해충돌 예방 노력이 창의적 연구역량과 기술실용화, 실험실창업 활성화, 고급이공계 인력의 민간 고용 확대·공공·민간 연구협력 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이해충돌 예방·관리 의무는 준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므로 연구자가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를 쉽고 상세하게 소개하되, 그 이상의 추가적인 예방·관리 의무는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이해충돌 예방·관리로 인하여 연구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자 함
-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연구개발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등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자등에게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어 연구개발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존 법령 및 자체 연구윤리규정과 조화·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충돌 예방·관리의 방안을 제시함
 -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상황별로 연구자등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길잡이를 제시함
 - 연구기관이 이해충돌 규정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각 연구기관별로 이미 마련해 놓은 연구윤리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2.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 발생 원인에 따른 구분

-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이해충돌은 기존에 대학의 연구윤리지침(또는 연구윤리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때 이해충돌은 그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인적 이해충돌, 금전적 이해충돌, 직무적 이해충돌, 지적 이해충돌 등으로 구분되어 왔음
 - 대학의 경우 이미 2013년 개정된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지침의 제정 의무가 부여되었고 일부 대학의 경우 그 연구윤리지침에 이해충돌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 대학 중심의 기존 연구윤리지침의 발생 원인에 따른 이해충돌 중 인적·금전적·직무적 이해충돌은 관련 법령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반면, 지적 이해충돌은 법령에 따른 규율의 영역이 아님



참고

<금전적 이해충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업으로부터 급여 또는 보수를 받거나 출장비, 선물 등을 받는 경우 • 특정 기업과 관련한 주식, 스톡옵션,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 기업 등 영리기관으로부터 고용, 이사직, 자문 등의 역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특정 영리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문료, 강의료 등을 받는 경우 • 이사직, 자문 등의 역할을 맡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의 평가/자문을 맡은 경우

<직무의 충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외부 파견, 외부 강연, 외부 조직(기업) 자문, 개인적 위탁과제 수행, 창업 등

<인적 이해충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경우 • 연구과제의 결과물(논문, 보고서 등)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하는 경우 • 각종 심사, 평가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지적 이해충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산,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널 심사 등에 있어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편향, 특정 결과의 지향 등과 반대되거나 경쟁하는 연구 논문을 심사하게 된 경우

☞ 관련 법령

〈학술진흥법에 따른 대학 연구윤리지침에 포함된 이해충돌 규정사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3조(사적 상충) ① 연구를 제안, 수행, 보고 및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연구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 본교 및 공동 연구자에게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저 연구의 발표나 투고 전에 본교 및 해당 학술단체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별지 제7호 서식]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전 보고는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6조(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 이해충돌 관련 법령 구조에 따른 구분

- 이해충돌 유형을 적용 법령,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기준으로 재정리하면 크게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자등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유형은 ①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③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④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⑥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⑦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임
 - 연구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유형은 ⑧가족 채용 제한, ⑨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임

☞ 관련 법령		
〈이해충돌 대응 방안〉		
구 분	내 용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연구자등 개인 차원의 대응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5조, 제15조
	과학기술 관련 특구 부동산 보유·신고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제14조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제16조
연구기관 차원의 대응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제11조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제12조

■ 연구자들의 직무 유형별 예시 및 관련 법령

-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①연구수행직무뿐만 아니라 ②교육직무 및 ③공공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실험실창업 주체로서의 직무 및 ④ 계약 및 지구 지정 등 연구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연구개발 이해충돌 길잡이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자율적인 예방과 관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직무 유형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표 2-3〉 구분 기준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가능 상황과 적용 가능 법령의 예시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예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사적관계 신고/ 채용제한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 갈등, 금전적 이해관계 등 사적인 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5조(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사적이해 관계의 신고 등)
	직무 유형별 예시	(연구) • 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참여하는 경우 (교육) • 학생 선발, 각종 포상, 상벌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실험실창업·계약) • 연구기관이 실험실창업기업과의 협력 연구 수행시 연구자가 창업연구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계약조건을 차별화 하는 경우 (평가·파견) • 평가, 파견자 선발 과정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특구지정 등 연구지원)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재산보유/ 거래·계약/ 비밀이용/ 사례금수수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연구자의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유형별 예시	(연구) • 연구자가 사외이사직을 맡은 회사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해당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교육) • 배우자의 사업에 금전적 혜택을 준 회사를 위해 자신의 연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려주는 경우	제9조(직무관련자 외의 거래 신고)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2장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및 보완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예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자문) • 영리기관으로부터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받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제10조(직무 관련 외 부활동의 제한)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실험실창업·계약) • 실험실창업 후 후속발명으로 발명된 연구개발성과를 소속 연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업무범위 등의 문제	(특구지정 등 연구지원) • 신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예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소유하도록 한 경우			
	구체적 상황 • 연구자가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10조(직무 관련 외 부활동의 제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직무 유형별 예시	(교육·자문) •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무료 외부 자문을 하는 경우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원회활동/ 파견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우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직무 유형별 예시 (평가·심사) • 기업 소속 연구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소속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개발등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참고

〈기타 포괄적 이해충돌 범주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용〉

- 청탁금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신탁 등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금품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지급 등에 대한 갈등과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관련 이해충돌 상황 예시〉⁶⁾

- 금전적 이해충돌의 상황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사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 특허 출원이 용이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의 연구 과제로 진행하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대학 보유의 시설 및 장비를 대학의 허가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대학(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를 대학의 허가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연구자가 대학이 보유하는 시설, 장비, 특허,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여 개량 기술을 발명한 뒤, 대학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창업 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 직무 충돌의 상황
 - 연구자의 창업 활동으로 인해 연구자가 소속 대학 및 학과에서의 연구 활동 및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자의 창업 활동으로 인해 연구자가 소속 대학 및 학과에서 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자가 대학에서 정하는 적절한 절차 및 협의 과정 없이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과제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참여시키는 경우

6)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안)(22.4.26)에서 일부 발췌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방안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목적

- 연구활동에서의 이해충돌은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연구자등과 연구기관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가 필수적임
- 연구자등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과 부적절한 관계, 복잡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비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연구기관의 책무

1) 정책, 제도, 자체 규정의 마련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의 공개, 연구수행 시 점검사항, 보고 내용 등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수행, 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소속 연구자의 창업에 학생참여 등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관련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이해충돌 관련 자체 연구윤리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가. 이해관계의 공개 범위 및 대상, 절차 등의 제시
 - 나.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 관리 등의 절차 및 관련 담당자를 명시
 - 다. 소속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이해관계 공개 정책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

☞ 관련 법령

〈창업, 외부활동 관련 연구윤리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0조(교원창업 및 연구수주 시 규정준수의무) ① 본교에 전임으로 소속된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이 사실을 본교에 알려야 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에 본교의 설비, 인력, 장비 등 본교자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에 불가피하게 본교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벤처사업과 관련된 연구자는 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교수로서 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2) 연구자 등 대상 교육 실시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등이 책임있는 연구·직무 수행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함

3) 이해충돌 관리

-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유형을 정하고 해당 유형의 활동을 하는 연구자등에게 이해충돌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검토, 확인 등 관리하기 위해 조치해야 함
- 연구기관의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구개발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과도한 규제로 연구자등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해충돌 예방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 및 기관 차원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함
 - ※ 예를 들어, 연구기관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임상연구를 해당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또는 기관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이슈를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포함됨
-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 후원 및 어떻게 이해충돌이 관리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응할 것을 권고

■ 연구자의 책무

1)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련 지침 준수

-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함
- 연구자등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정책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등 조치해야 함
 - ※ 이해충돌 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자일지라도 심사평가위원활동, 동료평가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스스로 관리를 하여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자는 이해관계로 인한 금전적 이익 등에 편향되어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연구자의 책무〉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규정 사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7조(관리의무) 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 ④ 이해 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3조(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9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발생,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법령 해설

■ 개요

- 새롭게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기존 규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개발 현장에서 관련 주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 길잡이는 관련 법령 및 처벌규정을 쉽게 소개하여 연구자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되, 법령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연구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이해충돌방지법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연구부문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기준)을 제정 운영하였는바⁷⁾,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공공연구부문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된 대부분의 법령규정을 이미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각 기관별로 아직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규정만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부문의 연구자등이 겪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함

■ 연구자 개인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1)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고 회피⁸⁾를 신청하여야 함
 - 신고 및 회피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 등이 해당 연구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소속기관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7)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기준)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개정 2016. 3.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22. 1. 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요령(개정 2022. 3.29.)」을 참고 규정사례로 제시함

8) 회피(回避)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기피(忌避)는 당사자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 등이 당사자 본인을 직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함



참고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사례 예시〉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B연구위원은 제안서 심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안서가 본인의 아들이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C회사에서 작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들이 부서장(관리자)으로 근무하는 회사(사적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평가위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대상 직무는 연구개발 현장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포괄함
 - 연구자등이 감사, 평가, 판정, 예산배분 등의 직무를 하는 경우
 - 연구자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참여하는 경우
 - 각종 심사, 평가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이 있음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연구자들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서 사적이해관계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하는 상대방을 의미함
 - 사적이해관계자는 연구자들의 자신, 가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⁹⁾ 이하 같다)

9)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¹⁰⁾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¹¹⁾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¹²⁾

○ 제3자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연구자등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구자등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연구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들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속기관장은 해당 연구자들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 중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그러나 해당 연구자들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연구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을 전제로 해당 연구자들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 관련 법령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기준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신설 2016.3.4.>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신설 2016.3.4.>
 6. 소속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6.3.4.>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6.3.4.>
 8.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6.3.4.>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6.3.4.>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기준책임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표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과기연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1.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표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표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9.>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표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표 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연구자들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소속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 등을 받고 연구자등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을 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임



참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원은 C회사의 기계장비 시험·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회사에는 1년 전에 A연구원을 퇴직한 D박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D박사로부터 다음 주말에 골프를 함께 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B연구원이 D박사와 함께 골프를 치기로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172호)

-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3)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택지 개발, 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본인, 배우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해당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해당 기관이 직접 개발 및 지구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신고 대상 업무 중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은 대표적으로 연구개발특구 및 로봇랜드 등을 담당하는 기관임
 - 단, 이 규정은 모든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연구개발특구 및 로봇랜드 등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대상에 포함됨



참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사례 예시〉

Q)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A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제반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재단에 재직하는 B본부장은 재단에서 지구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본부장은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장모님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보유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08호)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별표]

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및 지정,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및 승인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6.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제36호 및 제37호는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연구자들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¹³⁾가 연구자들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¹⁴⁾는 제외)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적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의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거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함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함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함



참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작년부터 신형반도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C회사(B연구위원의 직무관련자)의 D상무는 최근 음식점을 경영하는 B연구위원의 아내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투자(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투자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4)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구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172호)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구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연구기관들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중에서 금전을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2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5)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연구자들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직무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활동, 영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 연구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 소속 연구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 연구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참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작년부터 신형반도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C회사(B연구위원의 직무관련자)의 D상무는 B연구위원에게 '반도체 성능 및 생산 효율성 개선'에 관한 소정의 자문비를 포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C회사는 B연구위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자문 역시 소속기관의 직무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해당 자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됨

☞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81호)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외부강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21조의 2(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4.>

③ 소관연구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종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④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기준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3.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회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과기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4. 27.>

④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별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기연에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 연구자등(퇴직 후 3년 이내 포함)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¹⁵⁾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됨

15)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참고

〈부동산 신고 사례 예시〉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백신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B연구위원의 대학 동기를 통해 연락을 받은 C컨설팅의 D이사는 백신개발 정보를 알려주면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백신개발 정보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며, 그 정보를 미리 확보한 제약회사는 향후 백신공급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이를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여 재물을 얻는 것은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172호)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직무상 비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4.>

1. 연구회 소관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계, 재정 및 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직무<신설 2016.3.4.>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신설 2016.3.4.>
3. 기타 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신설 2016.3.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임직원의 주식취득은 본 조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9.>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알게 된 특정업체의 연구개발, 자금 및 경영여건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요령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에 창업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의 공개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취득은 예외로 한다.

7)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 민간기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의무가 부과됨
 - 공무수행사인은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신고 사례 예시〉

Q) A사립대학교 B교수는 최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간위원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R&D사업의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합니다. B교수는 첫 회의 심의안건에 A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B교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A사립대학교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직무관련자이고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따라서 B교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에게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B교수가 해당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1호)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 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1)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 연구기관은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속 고위직 재직자의 가족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여서는 안 됨
 - 이 때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됨
- 그러나 연구기관은 재직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 경우 재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등의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연구기관은 우수한 인력에 대하여 재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릴 필요는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채용이 가능할 것임

☞ 관련 법령

〈연구기관의 재직자 가족 채용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서는 경력직 연구자를 공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A연구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여 재직 중인 연구자의 자녀는 응시하지 말도록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적절한 것일까요?
- 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원칙적으로 기관 재직자의 직계혈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 연구기관은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속 고위직의 재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재직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그러나 연구기관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함
 - 예를 들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험실창업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음



참고

〈연구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서는 휴직상태인 소속기관 고위직 연구자B가 실험실기업으로 창업한 B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기업은 공동연구대상 기술력은 높으나 기업 규모는 매우 영세하여 공개경쟁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체결은 가능할까요?
- 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원칙적으로 기관 소속 고위 재직자가 창업한 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2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08호)

제14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익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법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법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 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면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직의 재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도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비해 수의계약 체결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음

☞ 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의5(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이해충돌 대응 체계 및 연구자·연구기관의 책무

1) 이해충돌 예방

-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함
 - 연구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발생,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연구윤리 교육〉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30조 (서울대학교의 책무) ① 서울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 (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 방지 교육 이외에도 이해충돌에 대한 신고와 처벌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연구자등이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연구자 개인 차원의 이해충돌 대응, 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대응뿐만 아니라 제3자 등의 이해충돌 신고, 연구기관 내에서 이해충돌 대응을 전담하는 이해충돌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 규정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벌·과태료 등을 통해서 연구자의 이해충돌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음

 **참고**

〈이해충돌 신고, 대응, 처벌 체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시된 이해충돌 신고, 대응, 처벌 체계는 다음과 같음

신고 및 제한		대응	위반시 처벌
연구자등 개인 차원의 대응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법 제5조)	14일 이내 신고·신청 → 직무 계속수행, 정지, 대리 등 조치(법 제7조)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법 제22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	신고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14일 이내 신고 → 직무 계속수행, 정지, 대리 등 조치(법 제7조)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법 제22조) 징계(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신고 및 제한		대응	위반시 처벌
연구자등 개인 차원의 대응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법 제9조)	14일 이내 신고 → 직무 계속수행, 정지, 대리 등 조치(법 제7조)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법 제10조)	금지 (단, 소속기관장 허가시 예외적 허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법 제14조)	금지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징역 또는 벌금, 몰수(법 제27조)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법 제16조)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준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법 제22조) 징계(법 제26조)
연구기관 차원의 대응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법 제11조)	금지 (단, 예외적 허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과태료(법 제28조)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법 제12조)	금지 (단, 예외적 허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과태료(법 제28조)
제3자 등의 이해충돌 신고(법 제18조)		신고 → 조사·감사·수사	공소·징계 등(법 제19조)
이해충돌 신고자 등의 보호(법 제20조)			징역 또는 벌금(법 제27조) 과태료(법 제28조)
연구기관의 이해충돌담당관 지정(법 제25조)			

2) 이해충돌 신고 및 처리 절차

- 누구든지 이해충돌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은 이해충돌 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자율성과 이해충돌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연구자등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이 이루어짐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이해충돌의 관리 절차 예시〉¹⁶⁾

이해충돌의 인식 및 보고

- 구성원은 연구와 관련한 유의미한 이해관계를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공개 또는 신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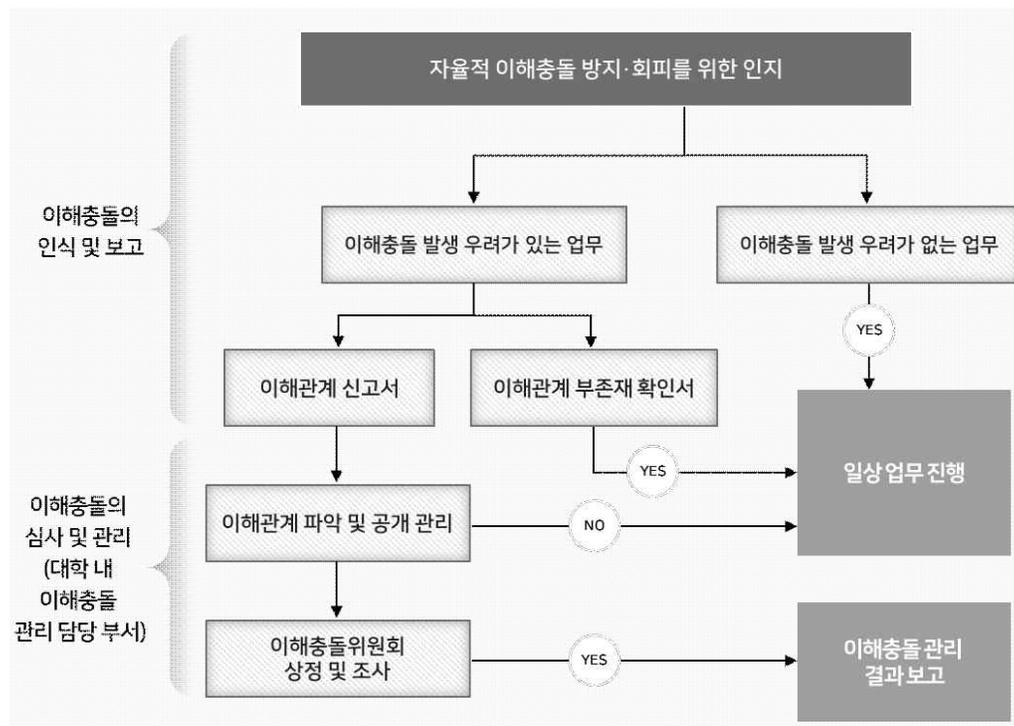
16)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이해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 및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가 정한 기간 안에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이해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 및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가 정한 기간 안에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이해충돌의 심사 및 관리

- 구성원과 대학은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로 인해 연구에 부적절한 영향 또는 편향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를 회피, 축소,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구성원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충돌의 주체(구성원 이름, 상대 기관명), 충돌내용에 대한 설명, 완화 및 해소 방법에 대한 설명
- 이해관계 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학 내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의사결정자로서 공개된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사안에 적합한 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대학 내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필요 시 이해충돌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자세한 심사 결과를 구성원에게 통보해야 함
- 대학 내 담당자는 구성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해충돌 발생 시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조사, 심사 및 관리 방법은 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 절차에 따라야 함



출처: 서울대학교 연구진 작성

[그림 2-2]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절차



참고

〈이해관계 신고서 양식(예시)〉¹⁷⁾

이해충돌 신고서			
신청인		소속부서	
신고일자		직위	
1. 이해충돌 발생 기간(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간) 2022.00.00 ~ 2022.00.00			
2. 이해충돌의 종류 (해당 항목에 표시, 중복표시 가능)			
금전적 이해관계	직무적 이해관계	인적 이해관계	지적 이해관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이해충돌의 내용			
이해충돌 대상자 혹은 대상기관			
대상자의 직무			
대상자와의 관계			
이해충돌 내용	※ 이해충돌의 내용의 경우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주세요.		
4. 업무배제신청 여부 (O / X)			
<p>귀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혹은 발생하여) 업무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를 신청할 경우 소속기관은 신청인을 해당 업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p>			
<p>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것을 확인합니다.</p>			
2022. 00. 00.			
성 명 : (서명)			

17)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참고

〈이해관계부존재 확인서(예시)¹⁸⁾〉

이해관계부존재 확인서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렇다’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니다’란에 ✓로 표시하십시오.

종류	내 용	그렇다 (존재)	아니다 (부존재)
금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으로 인해 연구에 부적절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타 기관의 업무에 관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기술이전, 창업, 이직 등으로 인해 연구 결과물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학 혹은 소속 기관과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인간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연구 및 업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입시 및 각종 평가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음. 		
직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연구 자원을 외부 활동에 사용하여 본인 및 타 구성원의 고유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으로 인해 본인 및 타 구성원의 고유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혁신, 종교적·도덕적·철학적 신념이 연구 및 교육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음. 본인의 이론적 입장, 신념과 반대 혹은 경쟁하는 연구 및 연구자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것을 확인합니다.

2022. 00. 00.

성 명 : (서명)

18)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참고****<이해충돌 심사의 원칙>**

- 이해충돌 심사 기준은 과학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 나아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는 과학적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축소, 협력연구나 자금 지원을 지연시키는 등 과학연구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해충돌 심사 시 고려사항
 - 이해관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해관계가 사고 과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와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가? 이해충돌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금전적, 인적 자원이 있는가?
 - 이해충돌 심사 결과에 따른 과학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부정적·긍정적인가?

3) 이해충돌담당관의 지정

-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관련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공정직무수행 점검, 기타 관련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등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해충돌담당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민간 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해충돌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담당관에 준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172호)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

〈이해충돌 담당 부서의 업무 예시〉¹⁹⁾

- 이해충돌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회의준비, 안건작성, 심의결과 통보 등)
- 이해충돌 심사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관리
- 임원, 보직자 및 연구자에 대한 이해충돌 검토 및 심의안 작성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서 규정하는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
- 구성원에 대한 이해충돌 교육 및 상담 실시
- 특정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대해 외부적 질문에 대한 답변(공개)
-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사례조사, 통계조사 및 자료 보관
- 기타 이해충돌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결정한 사항

19)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4) 이해충돌 관련 규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등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소속기관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 예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자등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연구자등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이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책무

-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함
 - 연구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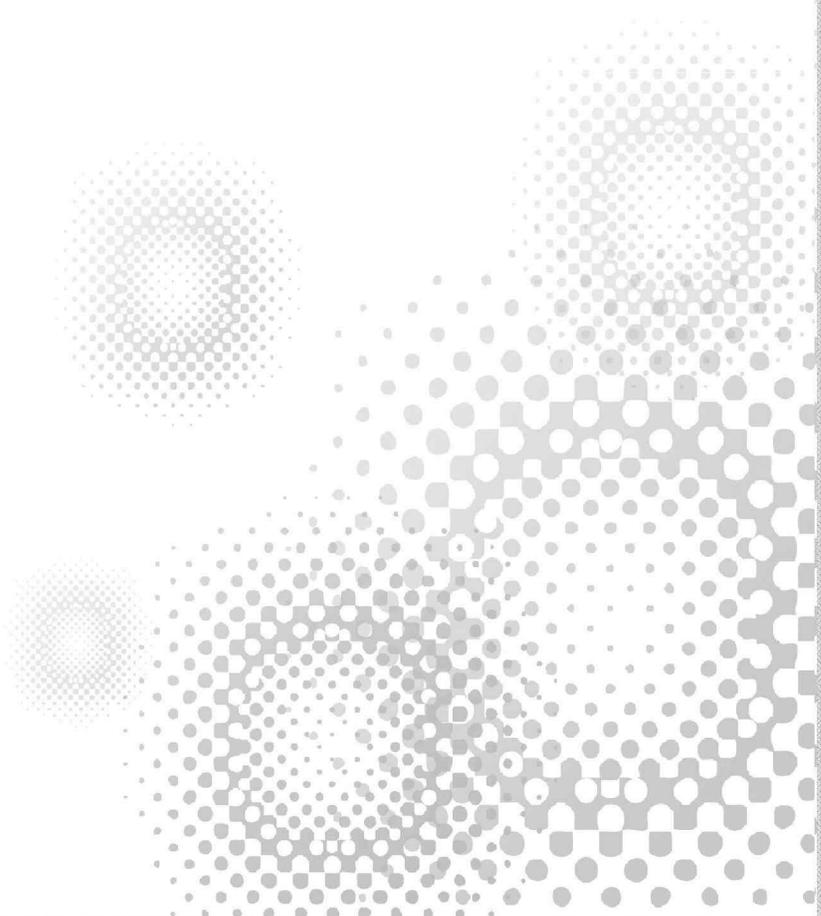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분야 가이드라인 발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22.5)
 - 산·학·연 등 국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체계 마련 및 연구현장의 자정작용에 의한 연구윤리 확보 및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길잡이」)를 개정 배포
 - 이해충돌 관련 법규정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이해충돌 예방·관리 규정 마련 의무의 실천을 위한 연구현장 실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 「연구윤리 길잡이」에 대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충청/강원, 영남, 호남)
 -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 안내서 제정을 위한 위탁연구 추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분야 가이드라인 발간
-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법령 해설과 이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방안을 제시
 - 공직유관단체와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민간연구기관을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혁신법에 따른 연구윤리 규정 마련에 대한 대상 및 범위를 제시
 - (연구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
 - (연구기관)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해충돌 대응 체계 및 연구자·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책무를 제시하고 관련 양식 예시를 제시
- 국가연구개발 관련 R&D 수행 및 관리,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 및 활용 등 과학기술분야 R&D 추진 과정 및 사후 관리 등의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의 제시 등 향후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의 보완을 통한 국가R&D 관련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산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제3장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제1절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

■ 조사 설계 개요

- (조사 목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원체계·절차 등의 사례 및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윤리 길잡이 보완 등에 활용
- (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개발기관
※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기업, 기타로 구분
- (조사 기간) 2022.10.11.(화) ~ 2022.11.11.(금)
-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 링크, 메일) 접수 후 일부 항목 재조사
- (조사 항목)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체계·절차,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담당자의 응답

■ 조사 결과 개요

- 접수 결과 (2022년 11월 30일 최종 기준)

기관 유형		기관 개수	연구비 규모별* 기관 개수		
			1,000억 이상 (상)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중)	500억 미만 (하)
학계	대학	72	7	6	59
연구계	출연연	23	15	6	2
	특정연	7	3	1	3
	전문연	2	0	1	1
합계		104	25	14	65

* 연구비 규모 자료

- 대학: 대학정보공시 2021년 중앙정부 연구비 총합(원)
- 출연연·특정연·전문연: 간접비 2021년 원가산출 제출 자료 2019년-2020년 평균 연구사업수익(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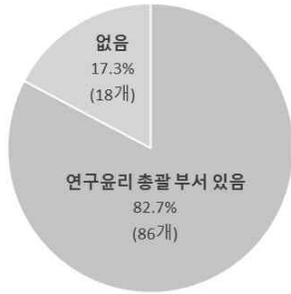
■ 주요 응답 결과 (전체 응답 결과는 [부록 1] 참조)

※ 출연연·특정연·전문연은 '연구기관'으로 통칭함

1. 연구윤리 확보 지원 현황

■ 연구윤리 전담 부서 현황

- (연구윤리 총괄 부서 운영 현황) 응답 기관(104개)의 약 82.7%(86개)가 연구윤리 총괄 부서를 운영한다고 응답함
 - 대학(72개) 중 77.8%(56개)가 연구윤리 총괄 부서를 운영한다고 응답함
 - 연구기관(32개) 중 93.8%(30개)가 연구윤리 총괄 부서를 운영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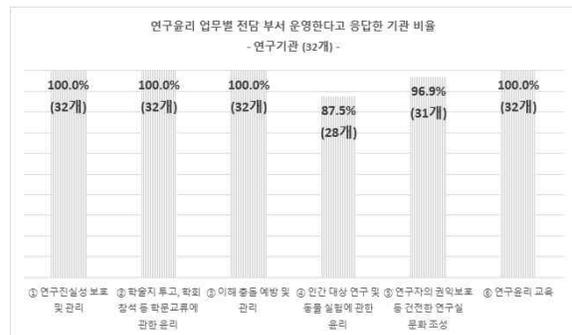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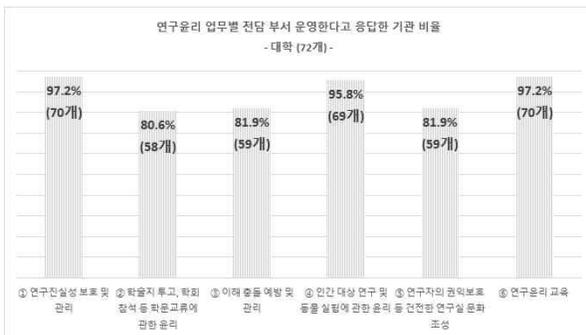


〈표 3-1〉 연구윤리 총괄 부서 운영 여부 응답

기관 유형	학계	연구계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응답기관 수	72개	32개	23개	7개	2개	104개
있다고 응답한 기관 비율(개수)	77.8% (56개)	93.8% (30개)	95.7% (22개)	100% (7개)	50.0% (1개)	82.7% (86개)

[그림 3-1] 연구윤리 총괄 부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

- (연구윤리 업무별 부서 운영 현황) 연구윤리 업무별 최소 90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 부서를 운영한다고 응답함
 - 대학(72개)은 ①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④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⑥연구윤리 교육 부서 등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연구기관(32개)은 대부분 업무에 대해 부서를 운영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3-2] 연구윤리 업무별 부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 - 대학

[그림 3-3] 연구윤리 업무별 부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 - 연구기관

■ 연구윤리 전담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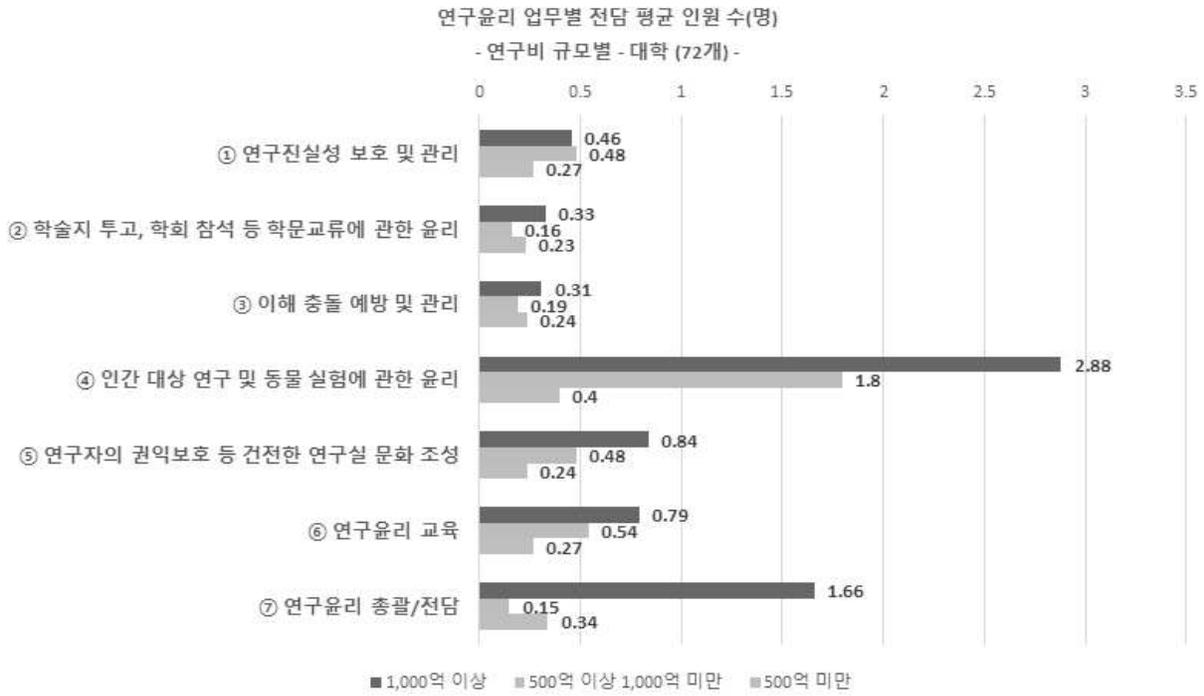
〈표 3-2〉 연구윤리 업무별 전담 인원 수 응답

항목별 전담 인원 수 평균 및 최대 인원 수(명)	학계		연구계								총계	
	대학		연구기관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104개	
	72개		32개		23개		7개		2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0.30	1.10	0.29	2.00	0.32	2.00	0.21	0.50	0.20	0.20	0.30	2.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0.24	2.00	0.30	1.00	0.35	1.00	0.17	0.30	0.20	0.20	0.26	2.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0.24	3.50	0.46	2.50	0.56	2.50	0.20	0.50	0.20	0.20	0.31	3.5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0.76	10.25	0.75	8.00	0.89	8.00	0.45	1.00	0.20	0.20	0.76	10.25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0.32	3.50	0.39	2.50	0.41	2.50	0.39	1.35	0.20	0.20	0.34	3.50
⑥ 연구윤리 교육	0.34	3.00	0.26	1.00	0.26	1.00	0.25	0.80	0.25	0.30	0.32	3.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0.45	5.50	0.29	2.00	0.33	2.00	0.22	0.50	0.10	0.20	0.40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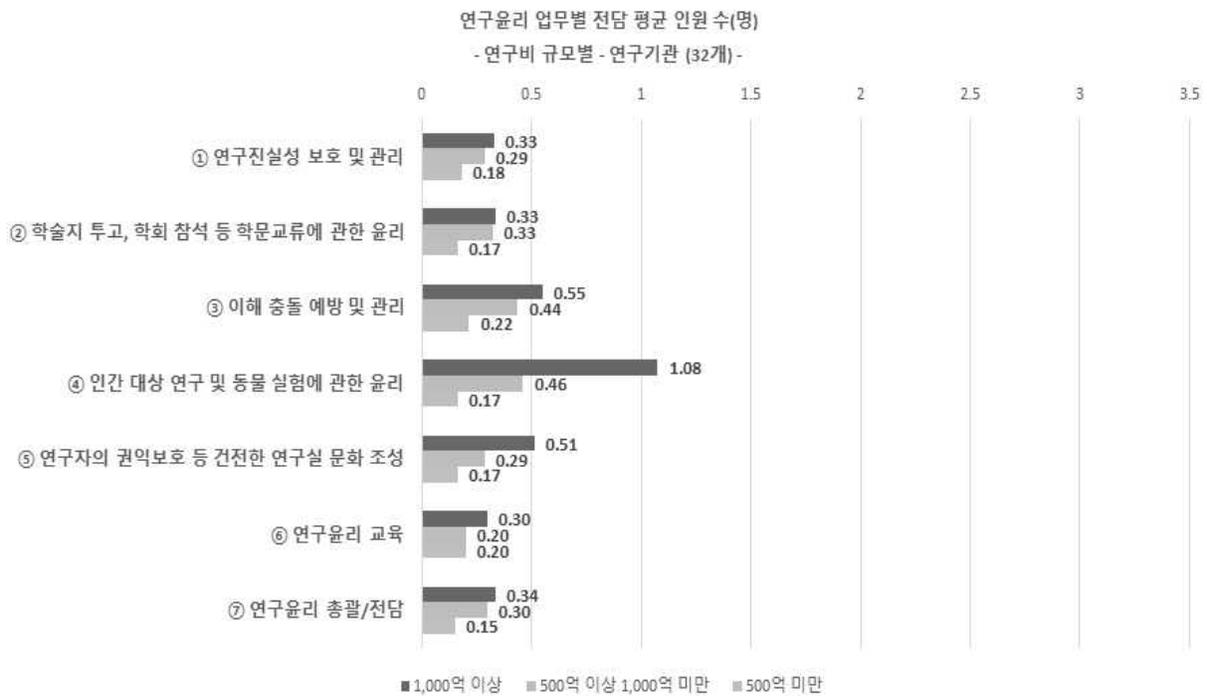
※ 인력이 없는 기관도 평균값 계산시 포함함

- (연구윤리 총괄 인원 현황) 응답 기관(104개)의 총괄/전담 인원은 평균 0.40명이라고 응답함
 - 대학(72개)은 평균 0.45명, 최대 5.50명으로 응답함
 - 연구기관(32개)은 평균 0.29명, 최대 2명으로 응답함
- (연구윤리 업무별 인원 현황)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인원을 제외하면 업무별 평균 0.26명에서 0.34명으로 응답, 최대 인원은 약 2명에서 3.5명으로 응답함
 - 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평균 1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임
 - ※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평균 인원 0.76명, 최대 인원 10.25명으로 타 업무 대비 다소 높게 응답된 것은 해당 항목을 재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IRB 등 위원회 관련 인원을 전담 인원으로 간주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라 보임
- (연구윤리 업무별 인원 현황 - 기관 연구비 규모별) 대체로 연구비 규모가 큰 집단의 기관들이 담당 인원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대학의 경우 연구비 규모 집단 간 응답 격차가 연구기관 대비 컸음
 - 업무 중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⑥ 연구윤리 교육 등 3가지에서 대학·연구기관 모두 연구비 규모가 큰 집단의 담당 평균 인원이 많다고 집계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그림 3-4] 연구윤리 업무별 전담 평균 인원 수 - 연구비 규모별 - 대학



[그림 3-5] 연구윤리 업무별 전담 평균 인원 수 - 연구비 규모별 - 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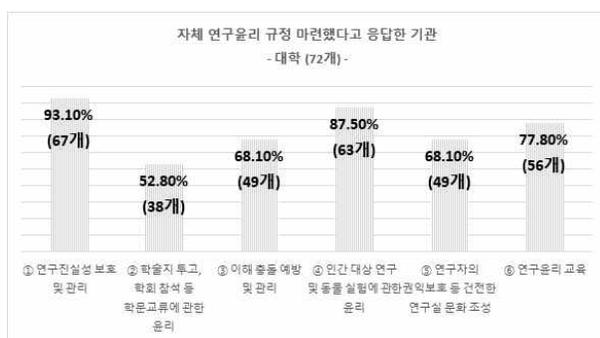
■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각호 항목별 최소 65.4%, 최대 95.2%의 기관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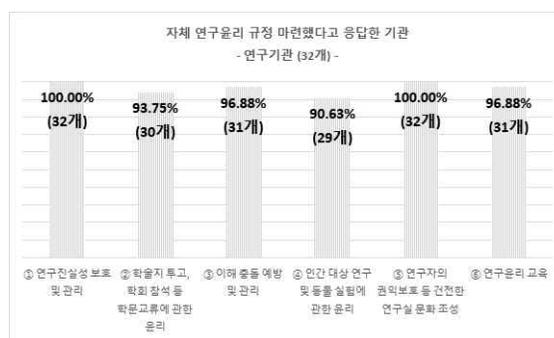
〈표 3-3〉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여부 응답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개수(% , 개)	학계	연구계				총계
	대학	연구기관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72개	32개	23개	7개	2개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93.1% (67개)	100% (32개)	100% (7개)	100% (2개)	100% (23개)	95.2% (99개)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52.8% (38개)	93.8% (30개)	71.4% (5개)	100% (2개)	100% (23개)	65.4% (68개)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68.1% (49개)	96.9% (31개)	100% (7개)	100% (2개)	95.7% (22개)	76.9% (80개)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87.5% (63개)	90.6% (29개)	85.7% (6개)	100% (2개)	91.3% (21개)	88.5% (92개)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8.1% (49개)	100% (32개)	100% (7개)	100% (2개)	100% (23개)	77.9% (81개)
⑥ 연구윤리 교육	77.8% (56개)	96.9% (31개)	100% (7개)	100% (2개)	95.7% (22개)	83.7% (87개)

- 대학(72개)의 경우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응답(93.1%, 67개)이 가장 많았고,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응답(52.8%, 38개)이 가장 적었음
- 연구기관(32개)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모든 항목 관련 규정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항목 대비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관련 규정에 대한 응답(90.6%, 29개)이 약간 적었음



[그림 3-6]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 -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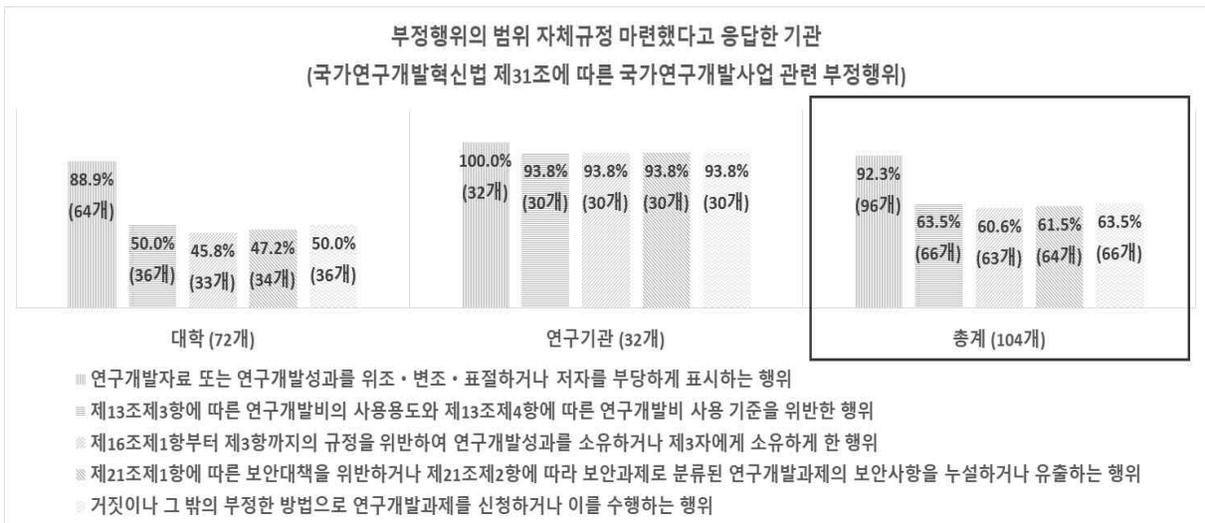


[그림 3-7]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 - 연구기관

2.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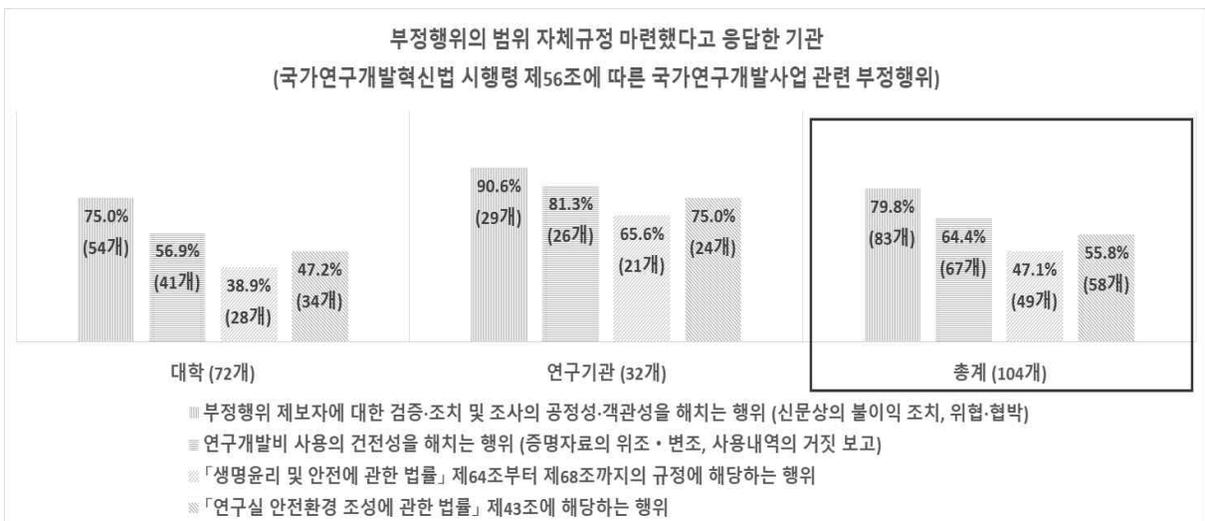
부정행위의 범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관련) 각 행위별 자체규정상 정의 여부에 대해 연구기관은 대부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대학은 '자료 또는 성과의 위조·변조·표절 혹은 부당 저자 표시' 행위에 대해 정의하였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다소 낮았음



[그림 3-8] 부정행위의 범위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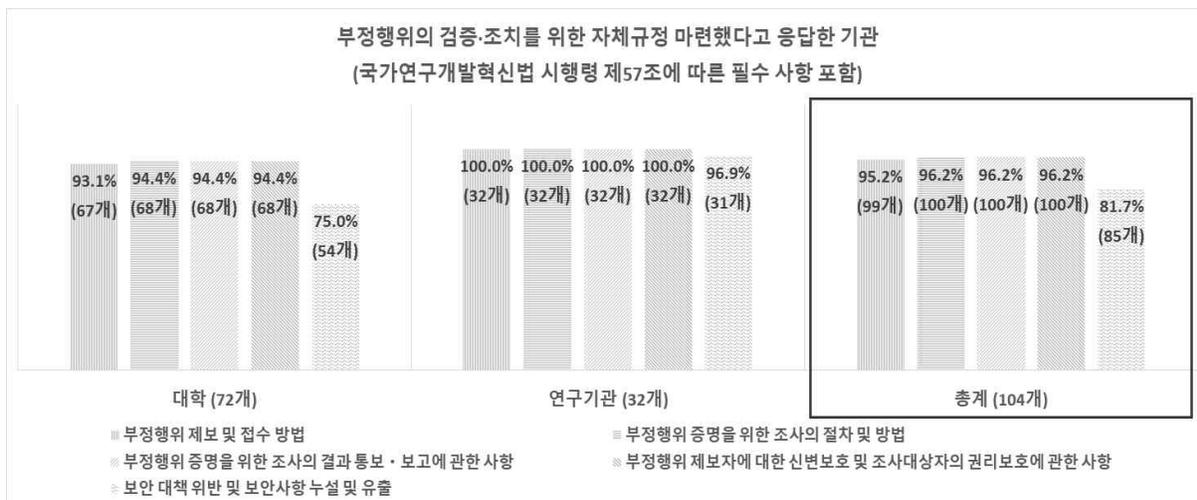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각 행위별 자체규정상 정의 여부에 대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 '부정행위 제보자 검증·조치 및 조사 공정성·객관성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정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명윤리법」 제64조-제68조 관련 행위' 정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음



[그림 3-9] 부정행위의 범위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 위한 자체규정 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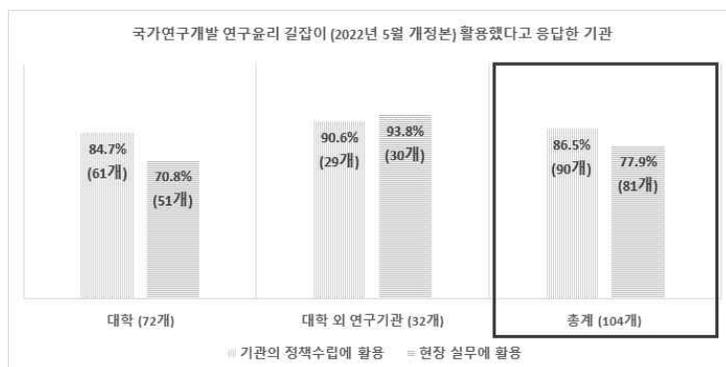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관련) 각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여부에 대해 대학과 연구기관 대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각호의 내용을 규정 내 반영하였다고 응답함
 - ※ ‘보안 대책 위반 및 보안사항 누설 및 유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각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 대상에 포함함



[그림 3-10] 부정행위의 검증·조치 규정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관련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2.5 개정) 활용 여부

- (연구윤리 길잡이 활용 여부) 응답 기관(104개)의 약 86.5%(90개)가 기관의 정책 수립에 활용, 약 77.9%(81개)가 현장 실무에 활용했다고 응답함
 - 대학(72개)은 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했다는 응답(84.7%, 61개)이 현장 실무 활용했다는 응답(70.8%, 51개)보다 많았음
 - 연구기관(32개)은 현장 실무에 활용했다는 응답(93.8%, 30개)이 기관 정책 수립 활용 응답(70.8%, 29개)보다 근소하게 많았음



[그림 3-11] 연구윤리 길잡이 활용했다고 응답한 기관

■ 조사 주요 결과

※ 본 조사 결과는 기관의 응답에 따른 것이므로 최대치 혹은 이상치 해석시 주의 필요

① 연구윤리 전담 부서/인력 응답 결과

- 총괄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연구기관들이 상당수였으나, 세부 업무별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들이 있었음
- 대부분 업무별 인원이 1명 미만이라 응답하여 연구윤리 외 다른 업무 겸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별 담당자를 구분하기보다 한 사람이 여러 연구윤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 보임
- 연구비 규모가 큰 집단의 인원이 평균적으로 더 많다고 응답되었고 대학의 편차가 연구기관의 편차보다 커 대학은 연구비 규모에 따라 연구윤리 지원 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② 자체 연구윤리 규정,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응답 결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제1항 각호의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이 대부분이나, 대학의 경우 학문교류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의 규정화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부정행위 정의 반영은 항목별로 응답 편차가 다소 있었는데, 특히 「생명윤리법」 제64조-제68조 관련 행위 반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임

③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내용 활용 응답 결과

- 대학과 기타 연구기관 모두 활용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조사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결과 해석시 자기보고(self-report)식 조사 특성상 응답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조직/인력 현황의 경우 인력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고 규정 반영 여부의 경우 담당자 해석에 따른 응답이므로, 실제 인력 현황이나 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의무 조사가 아니기에 기관의 현황을 공개하길 꺼리는 대학 등의 응답률이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응답률을 제고하는 공신력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재조사시 ①기존 조사에 항목 추가 협조 요청하고 출연연 등에 한해 추가 조사하거나, ②기존 조사 내용 배제하고 시기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예) 교육부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제6항을 근거로 매년 1월 대학 대상 조사²⁰⁾

20)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 실태조사' 웹페이지. https://www.cre.or.kr/bbs/BoardList.do?bbsId=BBSMS TR_00000000022&pageIndex=1.

제2절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

1. 연구윤리 우수사례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 촉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윤리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발전적 운영 지원
 - 연구윤리 우수사례 도출·운영 등에 기여한 개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여 등 정부 포상을 추진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에 활용

■ 조사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 경과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배포(과기정통부, '22.5.)
 -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지원
-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수요 및 우수사례 조사(KISTEP, '22.10.11~11.11)
-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심사(KISTEP, '22.12.14)
- 연구윤리 우수사례 심사결과 보고(KISTEP, '22.12.15)
- 연구윤리 확보 유공 장관 표창 후보자 추천(KISTEP, '22.12.2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조사 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22. 10. 11. ~ 11. 11.
- (조사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 등
- (조사내용) 연구기관 혹은 부서 단위에서 마련·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활동
 - 7개 연구윤리 분야별 사례조사
 - ※추천 분야 중 우수사례를 최대 5개까지 추천 가능 (동일 분야의 경우 2개 이내)

분 야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⑦ 기타

■ 조사 결과

- 총괄 현황

분야	기관 수	건수	기관명 (추천 건수)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2	2	고려대학교 (1) 한국기계연구원 (1)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3	한국원자력연구원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한양대학교 (1)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2	2	고려대학교 (1) 한국기계연구원 (1)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1	2	고려대학교 (2)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2	2	울산과학기술원 (1) 기초과학연구원 (1)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7	9	고려대학교 (1) 군산대학교 (1) 이화여자대학교 (2) 한국과학기술원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⑦ 기타	1	1	한국한의학연구원 (1)
총합(중복 제거)	14	21	-

- 7개 분야, 14개 기관, 21개 사례

○ 기관 유형별 조사현황

- 14개 기관 중 출연(연)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4개, 특정(연) 3개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출연(연)의 경우 연구지원 체계가 우수하여 연구윤리 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

기관 유형	기관명	제출 건수
출연(연)	한국기계연구원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한국원자력연구원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한국한의학연구원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대학	고려대학교	5
	군산대학교	1
	이화여자대학교	2
	한양대학교	1
특정(연)	울산과학기술원	1
	한국과학기술원	1
	기초과학연구원	1
총합(중복 제거)		21

○ 연구윤리 분야별 조사현황

- 연구윤리 분야 중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가 9건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음
-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분야의 이해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해석됨

분야	기관 수	건수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2	2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3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2	2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1	2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2	2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7	9
⑦ 기타	1	1
총합(중복 제거)		21

2.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심사

■ 심사 개요

- (심사 일정) '22. 12. 14.
- (심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 등 연구기관의 21개 사례
- (심사위원회 구성) 학연 연구윤리 전문가 5인을 적정구성(단, 우수사례 제출 기관 소속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표 3-4〉 심사위원 현황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연구기관 (3명)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센터장	김해도	위원장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감사실장	김병철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범	위원
대학 (2명)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김기태	위원
	연세대 화학과 교수	이원용	위원

- (심사 방법) 연구자 체감도·확산 가능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 심사자료는 기관별 제출·접수한 우수사례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심사
 - 심사점수는 심사위원별 총점을 산술평균
 -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사례 중 고득점순으로 적정개수(5개 이하)의 우수사례 선정

〈표 3-5〉 심사기준

심사지표	배점	심사내용
연구자 체감도	30	• 연구자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는 등 소속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30	•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를 평가
중요도 및 난이도	20	•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을 평가
확산 가능성	20	• 동 사례에서 나타난 노력이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심사 결과

- 21개 사례 중 Best Practices로서 향후 수상 및 확산 등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추천

〈표 3-6〉 우수사례 심사결과

순위	분야	기관명	사례명	점수	심사의견
1	⑤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캠페인 진행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학 R&D시스템의 가장 큰 현안인 학생인건비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에 관한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여 연구자 체감도 및 유관기관으로 확산가능성이 높음
1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윤리 Master 제도 운영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기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지역별 Master 도입이 모범적이며 연구윤리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추진도 실효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3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	한양대학교	특수관계인 신고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수관계인 신고시스템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축 및 실행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 유관기관으로의 확산필요성이 있음
4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문교류 이해 충돌 등 전분야에 걸쳐 연구윤리 가이드북의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어 연구자 체감도 및 확산가능성이 높음
5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율을 위한 대학원 학칙개정, 교과목 개설 및 비교과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시스템 마련	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학칙 개정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윤리 정착의 토대를 구축함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이후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 등 연구윤리 지원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하였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대학·출연(연)·특정(연)·전문(연) 등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체계·절차,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담당자의 응답을 조사함
- 연구기관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음
 - 연구윤리 전담 부서/인력 조사 결과 연구윤리 부서·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전담 인력이 다소 부족하고 기관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전담 인력 규모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총괄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연구기관들이 상당수였으나, 세부 업무별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들이 있었음
 - 대부분 업무별 인원이 1명 미만이라 응답하여 연구윤리 외 다른 업무 겸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별 담당자를 구분하기보다 한 사람이 연구윤리의 여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연구비 규모가 큰 집단의 인원이 평균적으로 더 많다고 응답되었고 대학의 편차가 연구기관의 편차보다 커 대학은 연구비 규모에 따라 연구윤리 지원 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자체 연구윤리 규정,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조사 결과 상위 규정 내용을 반영한 기관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항목 미반영 상태인 대학도 있었기에 대학 간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의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이 대부분이나, 대학의 경우 학문교류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의 규정화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부정행위 정의 반영은 항목별로 응답 편차가 다소 있었는데, 특히 「생명윤리법」제64조-제68조 관련 행위 반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임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내용’ 활용 여부 조사 결과 대학과 기타 연구기관 모두 활용했다는 응답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많았음
 - 특히 대학은 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였다는 응답이 현장 실무에 활용했다는 응답보다 많았음

■ 연구기관 연구윤리 지원 현황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자기보고식 자발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조사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필요 있음
 - 결과 해석시 자기보고(self-report)식 조사 특성상 응답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 * 조직/인력 현황의 경우 인력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고 규정 반영 여부의 경우 담당자 해석에 따른 응답이므로, 실제 인력 현황이나 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의무 조사가 아니기에 기관의 현황을 공개하길 꺼리는 대학 등의 응답률이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응답률을 제고하는 공신력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재조사시 ①기존 조사에 항목 추가 협조 요청하고 출연연 등에 한해 추가 조사하거나, ②기존 조사 내용 배제하고 시기 고려하여 추진 필요
- * 예) 교육부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제6항을 근거로 매년 1월 대학 대상 조사²¹⁾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연구윤리 우수사례는 향후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규정 마련 및 실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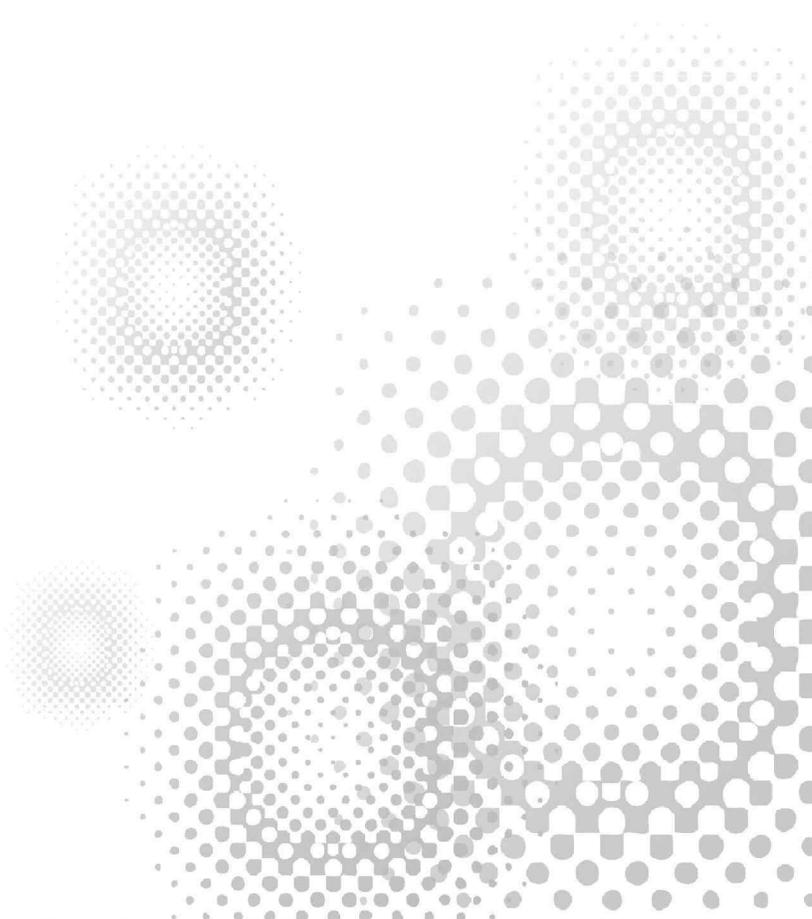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및 분야별 우수사례로 출연(연) 2개, 대학 2개, 특정(연) 1개 선정
 - 분야별로는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2개, 그 외 '①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⑤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문화 조성' 분야에서 각 1개씩 선정
- 기관 특성별 및 사례별 사례 활용 가능
 - 학생연구자의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자체실태조사 및 캠페인 진행(울산과학기술원)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고려대학교)
 - TFT 구성 및 연구참여 신고 시스템 정착(한양대학교)
 -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산 체제에 특화된 연구윤리 체계 마련(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한국기계연구원)
- 연구윤리 우수사례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이론 중심의 연구윤리에서 벗어나 실천하는 연구윤리 지원 도모
 - 연구윤리 우수기관 발굴·홍보 및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통한 기관 차원의 노력 기대

21)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 실태조사' 웹페이지. https://www.cre.or.kr/bbs/BoardList.do?bbsId=BBSMS TR_000000000022&pageIndex=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제4장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처리 체계 및 절차



제1절 개요

■ 부정행위 조사·검증 등 체계·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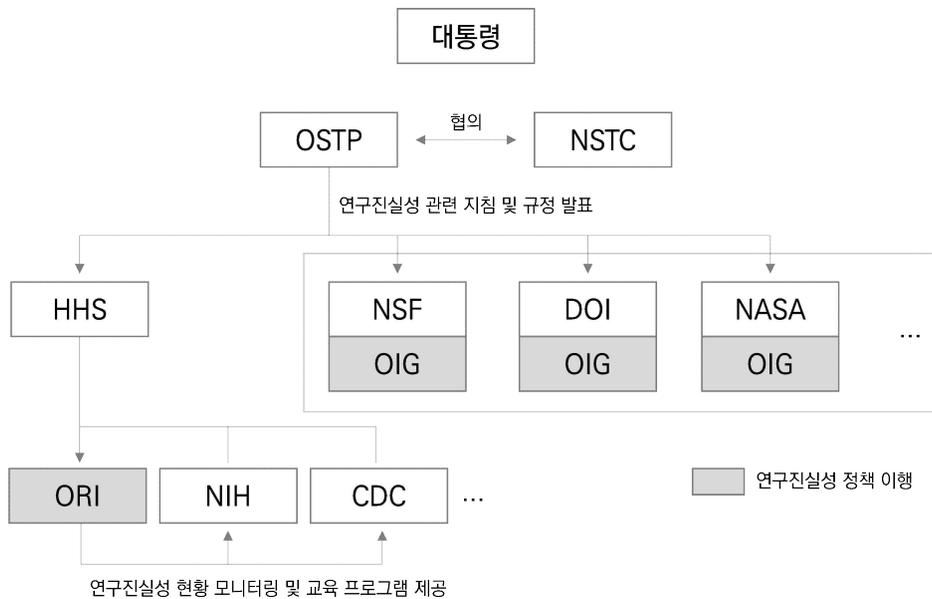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 체계 및 절차의 일관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제시가 필요
- 해외 주요국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체계를 검토함
 -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의 발생 및 조치 내역 등을 정부기관에서 조사하긴 하나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독일 및 호주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한적임
-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사항을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제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본조사 절차일정의 사전안내, 연구 부정의심행위의 유형과 고의·중과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을 규정하여 제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음
 -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알 권리 보장, 개인신상정보의 보호 등을 통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 부정행위 조사·검증 관련 규정의 차이를 검토함
 -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의 부정행위 조사·검증 방법을 비교·검토한 결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나 이의신청을 반영한 조사종료 후 재조사 단계의 객체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
 - 검증 기간,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으나 검증 절차, 검증 결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개정 시 부처 협의 등을 진행

제2절 주요국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체계 및 절차

1. 미국

■ 미국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거버넌스

-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책 개발은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OSTP)이 담당하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2000년 12월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 정책(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을 발표하여, 이를 근거로 각 행정 부처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각 23개 부처 및 연방기관의 전담 부서가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업무 성과를 평가하던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이하 OIG)이 연구진실성 관련 기능을 담당함



[그림 4-1] 미국의 연구진실성 정책 체계 거버넌스²²⁾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는 산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하 NIH)의 독립기관인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이하 ORI)을 중심으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2)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STEPI, 2018.12

- ORI는 HHS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진실성 현황을 관리, 감독할 뿐만 아니라 연구진실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특히, ORI는 독립적으로 연구진실성 정책 전담 기관의 원형을 확립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HHS 관할 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관할 외 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진실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하고, 연구부정행위 조사·감독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연방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은 산하에 OIG를 설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처리하고 있음
 - NSF의 OIG는 NSF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운영 관련 연구부정행위를 조사·심의 및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추진
- 연구부정행위 의혹 발생 시 1차 조사 및 판정 주체는 해당 연구기관이며, 이는 연방정부 규정(Code of Federal Register)*에 명시되어 있음
 - * 보건의학 연구 관련은 “42 CFR 93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Final Rule”에서 국립과학재단(NRF)의 일반 연구 관련은 “45 CFR 689 Research Misconduct”에서 규정
 - 국립과학재단 감사실(NSF OIG)과 보건부 연구진실성사무국(HHS ORI)은 개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 HHS는 지원하는 연구에 대한 최종 감독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할 권리와 필요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

■ 미국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 NSF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를 제안 또는 수행, 연구 결과를 보고하거나, NSF에 제출된 연구 제안을 검토할 때 생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OIG에서 혐의를 보고 받고 처리함²³⁾
 - 혐의를 신고할 때 신고자는 프로그램 사무소가 아닌 OIG에 알려야 하며, 프로그램 담당관이 위법 행위 혐의를 알게 되면 NSF 정책에 따라 평가를 위해 그러한 주장을 OIG에 전달해야 함
 - 혐의 접수 시 NSF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NSF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조사하지 않으며, NSF 자금을 받는 기관에서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관할권이 없는 경우 해당 주장 해결을 위해 적절한 기관 또는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함
 - 혐의 대상에게 혐의 접수 사실을 고지하고 혐의에 대해 설명한 후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요청하며, 기관에는 알리지 않고 초기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근거 없는 비난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NSF의 연구부정행위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피험자에게 알림

23)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Chapter XII - Grant Administration Disputes and Misconduct, NSF, June 1, 202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위법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거나 그러한 판결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NSF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개인 또는 조직에 통지, 의견 및 반박을 제공할 기회 및 항소할 기회를 제공함

〈표 4-1〉 NSF OIG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²⁴⁾

절차	내용	비고
연구부정행위 혐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된 혐의가 연구부정행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NSF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혐의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조사 수행을 알림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혐의 또는 위법 행위의 명백한 사례가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정보 수집 및 예비 사실 조사로 구성 조사 결과 위법 행위의 혐의 또는 명백한 실질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수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조사 및 심의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기관에 조사를 수행하고 증거와 결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며, 기관은 180일 동안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OIG에 보고 	관리할 수 없는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진행
기관 결과 조사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서 권장 또는 부과한 조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과 수락, 추가 정보 요청, 자체적인 독립적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함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사건을 종료하고 피험자와 신고자에게 통지함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자체 조사 보고서를 작성 	
조사 결과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부정행위의 심각성, 행위가 저질러진 의도의 수준, 고립된 사건인지 또는 패턴의 일부인지 여부, 연구 기록, 연구 주제, 기관 또는 공공 복지에 대한 영향 및 기타 관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해 NSF의 부국장에게 권장 사항을 제시 	
행정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보고서가 완성되면 NSF 부국장에게 보내 판결을 내리고, 부국장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NSF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와 항소권에 대한 정보를 관련 개인이나 기관에 직접 제공 	부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NSF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음

24) OIG Procedure for Misconduct Investigation, NSF, 2020.02.04

- HHS의 지원을 받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ORI가 요구한 기준에 따라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연구기관은 비공식 조사 보고서(inquiry report)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당사자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계 없이 비공식 조사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비공식 조사 보고서를 신고자에게도 통보하고, 신고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ORI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아 보고서의 적시성, 객관성, 공정성, 완결성을 총괄 검토하며, 연구기관의 절차와 결론 및 행정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

〈표 4-2〉 ORI 보고 활동을 포함한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²⁵⁾

절차	내용	비고
연구기관의 비공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거나 잠재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비공식조사를 실시 (60일 이내) • 비공식조사 결과 공식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은 공식조사 절차를 시작하며, 이를 HHS-ORI에 보고 	비공식조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는 시점에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연구기관의 공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식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식조사를 시작하여야 하고 그전에 비공식조사 보고서를 ORI에 제출 • 공식조사 보고서 초안이 작성된 후에는 보고서 초안을 당사자에게 초안을 전달하고 당사자는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본조사 착수 후 최종 보고서를 ORI에 120일 이내로 제출 • 당사자는 공식조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연구기관은 120일 이내에 항소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함 	공식조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는 시점에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ORI에 대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조사, 공식조사, 항소 단계에서 당사자의 유죄인정, 당사자와의 합의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종결할 경우 이를 ORI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비공식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HHS의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HHS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25)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대응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9.12.02

2. 독일

■ 독일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거버넌스

-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진실성 정책 전담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기관에 대한 공공 자금 투자 및 조정 기능을 갖는 독일연구재단(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이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권고안」 제시

* DFG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조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연방정부 산하 기관은 아님

- 다만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연구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사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DFG가 자체적으로도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둠

* 과학적 부정행위의 혐의가 독일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구자, 심사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독일연구재단(DFG)은 자체 절차로 혐의를 조사

- 독일 내에서 연구진실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연구진실성 증진 정책은 아직 시행 초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미흡한 실정²⁶⁾

■ 독일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 DFG의 지원을 받는 독일 내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사건의 경우 자체 절차 규칙에 따라 DFG는 과학적 위법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2단계 절차를 수행²⁷⁾

- 연구부정행위 의혹 발생 시 연구기관의 옴부즈만, 독일연구재단의 옴부즈만 등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위원회*는 위법행위 징후가 확인되면 DFG 또는 해당 대학/연구기관에 문제를 전달함

* 옴부즈만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는 조사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에 제시된 정보 검토 및 연구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을 일차적인 목표로 함

- DFG의 연구진실성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비공식적 예비조사 절차와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공식적인 본조사 절차로 구성
- DFG의 옴부즈만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인문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기관은 2명의 추가 전문가 위원을 선택할 수 있음

26)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STEPI, 2018.12

27) Procedures in cases of suspected scientific misconduct, DFG, 홈페이지 22.12.01 접속

〈표 4-3〉 DFG 지원금 수혜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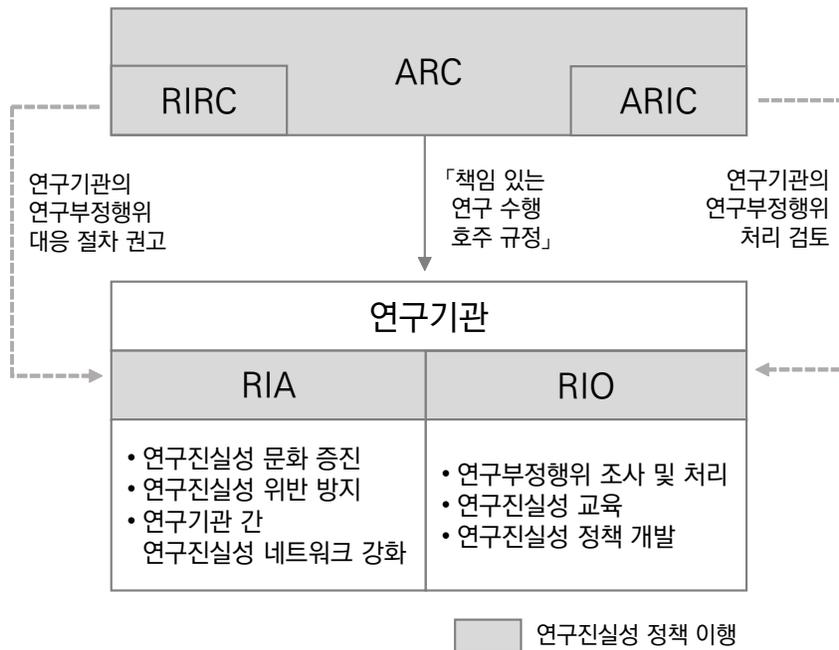
절차	내용	비고
혐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G 관련 연구사업 또는 DFG 내부 종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음 	
옴브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브즈만이 혐의를 살피고, 위법행위의 징후가 확인될 경우 그 내용을 DFG에 전달 	DFG의 지원과 관련이 없다면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이 문제를 전달
비공식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는 DFG 연구진실성 사무국에서 담당하게 되며, 혐의를 검토하여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종료함 •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입증되었을 경우 조사 대상자는 관련 증거와 조사 내용에 대해 통보받고, 이에 대해 4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조사 대상자의 이의 진술서와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부족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후속 조사 종단을 결정할 수 있음 • 단, 제보자가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DFG와 협력하여 2주 동안 항의 의견을 제출하여 예비조사 결론을 도출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경우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를 의미
공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조사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위원회가 공식 본조사를 책임지며, 위원회는 인문사회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을 대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사 결과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DFG의 합동 위원회에 사안을 바탕으로 징계결정을 내리게 되며, 조사위원회는 그러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인정해야 함 	

28) Procedures in cases of suspected scientific misconduct, DFG, 홈페이지 22.12.01 접속

3. 호주

■ 호주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거버넌스

-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이하 ARC)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²⁹⁾
 - ARC 산하의 연구진실성검토위원회(Research Integrity Review Committee, 이하 RIRC)와 호주연구진실성위원회(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이하 ARIC)가 호주 연구진실성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음
 - RIRC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호주 규정」에 따라 각급 연구기관이 채택해야 할 연구진실성 문화 증진 방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
 - ARIC는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ARC 보고 절차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직접 받거나 처리하지 않고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처리되었는지를 검토
 -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책의 이행 책임은 각급 연구기관에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내에 각각 연구진실성 자문위원회(Research Integrity Advisory, 이하 RIA)와 연구진실성 사무국(Research Integrity Office, 이하 RIO)를 설치하도록 규정



[그림 4-2] 호주의 연구진실성 정책 체계 거버넌스⁸⁾

- 각 연구기관에 설치된 RIO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며, 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대해 ARIC가 검토 및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

29)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STEPI, 2018.12

- ARIC에서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호주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받으나, 이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검토로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지는 않음³⁰⁾

■ 호주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 연구부정 내 혐의가 제기되면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쳐 최종 조치를 취하게 되며, 연구부정행위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연구기관이 연구비 집행을 보류할 권한이 있음
 -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및 완료 시에 10일 이내에 ARC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본조사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조사대상자에게 공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침

〈표 4-4〉 호주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³¹⁾

절차	내용	비고
혐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자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에서 신고 접수 가능 •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책임자(Designated Officer)는 신고가 철회되더라도 신고를 검토할 의무가 있음 	부총장, RIO의 Director /Manager, 선임연구원 등을 지정책임자로 임명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 • 지정책임자는 신고내용을 적절한 평가책임자(Assesment Officer)에게 배정하고, 평가책임자는 예비조사를 수행 • 평가책임자는 예비조사 완료 시 지정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 지정책임자는 예비 평가 결론으로 혐의 취하, 혐의 인정 및 이의 제기 없음, 본 조사 필요, 기타 책임 기관으로의 회부 중에서 결정 	RIO staff, 선임연구원 등을 평가책임자로 임명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충돌 관계가 없고 관련 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 • 조사위원회는 관련자 면담, 자료 조사 분석 등을 통해 당사자가 강령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보고서 초안을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그 의견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책임자에게 보고함 	
조사 결과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검토 후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최고책임자(Responsibel Executive Officer)에게 보고함 • 윤리강령 위반 발견 시 최고책임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최고 경영자 또는 부총장 등 기관에서 결정한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임명

30) 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ARIC) Request for Review, ARIC, 2019

31) 「Guide to Managing and Investigating Potential Breaches of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2018」, ARC, 2018

제3절 부처별 연구부정행위 처리 체계 및 절차³²⁾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³³⁾

■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으로 규정(최종 시행규칙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은 연구윤리 길잡이에 반영 예정)
 - ※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 규정
- 부정행위의 접수를 위해 부정행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익명 제보가 가능하도록 함
 - 제4조(부정행위의 제보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부정행위 제보 접수 담당자를 지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제보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제5조(익명 제보의 검토)에서는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익명 제보로 인한 조사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부정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제6조), 본조사(제7조)로 이뤄지며, 본조사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함

〈표 4-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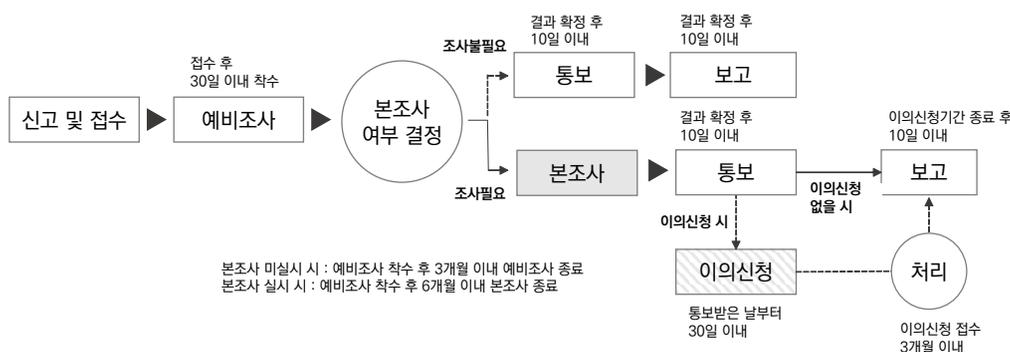
절차	내용	비고
제보 접수/이첩 또는 연구부정행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정행위 제보 접수 담당자에게 제보 접수 •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첩받는 경우에는 그 제보 내용의 타당성 등 익명제보에 적힌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 • 익명제보의 검토 결과 검증·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익명제보자에게 통보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

32) 2022년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 상위 5개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중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체 규정이 있는 부처 조사

33) 2022년 7월 7일 입법 예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동년 12월 16일 최종적으로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절차	내용	비고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 접수/이첩 또는 연구부정행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 •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예비조사 착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 • 예비조사 결과가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및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예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 •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본조사 결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본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조사 결과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3개월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조사의 보완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예비조사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제6조제4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하여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제7조제4항)
- 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서 받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제7조제7항), 조사를 재실시할 경우 이를 사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함(제7조제8항)



[그림 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제8조 및 제9조에서 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구성해야 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권한과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시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행위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행위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해당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전문가 중 1명 이상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함
- 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본조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

■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제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본조사 절차·일정의 사전안내, 연구 부정의심행위의 유형과 고의·중과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을 규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전에 조사 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보자는 조사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5항, 제6항)
 - 조사위원회는 조사관련자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제9조제7항, 제8항)
 - 이의신청 결과통보에 대해 제보자·조사대상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보자·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연구개발기관의 불합리한 조사·검증 방지(제10조제1항)
 - 제11조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지침’) 을 제정하여 대학을 포함한 연구 현장에 연구윤리 제도,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의 기준을 제공

■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이 창구는 익명 제보도 접수 가능함
 -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에서는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제4장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처리 체계 및 절차

-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제19조), 본조사(제20조), 판정(제24조)으로 이뤄지며,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5조)을 받음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표 4-6〉 교육부 지침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절차	내용	비고
제보 접수 또는 연구부정행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 •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검증 책임주체는 연구 수행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 (제16조에 명시)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 예비조사 종료 시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 • 예비조사 결과가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종료 후, 즉시 본조사에 착수 •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해야 함 • 본조사 결과 확정된 즉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실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조사 실시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 연장 가능
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조사 요청 가능 	
조사 결과의 제출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교육부 장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 교육부 장관은 추가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제21조, 22조에서, 권한은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과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제13조)은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인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제14조,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음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 제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피조사자에 대한 성급한 공개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판정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 단, 교육부 지침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제3항”은 ‘법령 위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공권력에 의한 조치 필요’ 등 상황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보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하여 이에 필요한 고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제시³⁴⁾
-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이하 '산업부 요령')을 제정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제공

34)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p49.

■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접수 시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의 권한과 역할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접수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행기관은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 보고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제6조제1항)
 - 다만,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제6조제2항)
 - 전담기관은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아닌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나,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제7조제2항)
 -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예비조사에서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음
- ※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고 명시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와 본조사 결과 확정 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조사기관의 장은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표 4-7〉 산업부 요령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절차	내용	비고
제보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 전담기관은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함 제보는 실명 제보가 원칙이되,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받은 경우 익명 제보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 (제12조)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예비조사 종료 시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전담기관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 가능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판정까지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본조사 결과 확정 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가능
판정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 연장 가능
이의제기 및 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결과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추가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전담기관의 장은 판정결과에 따라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참여제한, 연구개발과제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 	

- 본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제17조에서, 권한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제9조,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음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함
 -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제보자와 조사대상자가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연구부정행위 조사 검증 과정의 객관성·일관성·공정성 확보

- 입법 예고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³⁵⁾에서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과반수를 해당 연구개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회 30%이상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음
 - 교육부 지침의 조항을 참조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직적이고 과도한 제재처분을 방지하였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제8조(조사위원회의 판단)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해당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본조사 기간, 조사결과의 정부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국가R&D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1차적인 책임은 연구기관에 있으나, 연구기관의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함
 -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1차 조사 및 판정 주체도 해당 연구기관이며, 지원기관은 조사과정의 자문 제공 및 판정 후 보고와 검토를 담당함

35) 제3절에서 검토한 자료(2022년 7월 7일 입법 예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현재의 시행규칙(22.12.16일부 개정)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음

〈표 4-8〉 주요국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대처 주체 비교³⁶⁾

구분	미국	독일	호주
연구부정행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 ORI, NRF 등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 지역정부기관 • 민원조사관 • DF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연구부정행위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책임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 미국은 각급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갖지만, 조사 수행의 기간 동안 ORI에 엄정한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ORI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ORI가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고 조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관여하는 등 기능이 제한적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도 동일한 검증 과정을 준용하므로써 검증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또한,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시효 등을 시행규칙(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5항에서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부정행위제보 또는 인지가 부정행위 발생 10년 이후인 경우 부정행위 접수시 검토하여 조사 대상 제외하는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소요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산업부 규정에서는 제보 접수일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단, 교육부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시효가 2011년 폐지되었고, 시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36)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STEPI, 2018.12, 일부 발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등의 권리 보호 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제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본조사 절차·일정의 사전안내, 연구 부정의심행위의 유형과 고의·중과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을 규정하여 제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음
 - 교육부 지침과 산업부 지침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을 검증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조사결과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등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와 제보자의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부정행위 의혹으로 제보되어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검증이 완료되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기 전에 연구부정행위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NSF는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부정행위 혐의 통보 시 연구부정행위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알리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보자의 권리 보호 강화도 중요하나,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므로,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 제보에 적극 대응 필요
 - 현재는 허위로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 제보는 '악성 민원에 의한 업무 방해'로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³⁷⁾

37)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2019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0조(제보)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 ⑤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처 간 상이한 부정행위 조사·검증 기준 및 절차 정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교육부 지침, 산업부 규정에서는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에 예비조사, 본조사, 이의신청, 재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나 조사 종료 후 재조사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 차이가 있음
 - 이의신청 반영이 끝난 본조사 종료 후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추가 재조사 요청 또는 이의신청을 과기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부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산업부는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검증의 각 단계에 따라 조사 결과의 보고 기간에 차이가 나타나 과기부, 산업부의 경우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토 기간은 교육부, 산업부는 60일 이내, 과기부는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조사결과보고서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에서만 명시하고 있음

〈표 4-9〉 부처별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

구분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예비조사	착수	•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보고**	•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 결과 확정 후 30일 이내	•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판정	• 본조사 미 실시 시 착수 후 3개월 이내	-	
본조사	착수	-	-	• 예비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
	판정	•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		
	통보*	•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보고**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결과 확정 후 30일 이내	•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구분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이의신청	•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처리(재검토)	• 접수 후 3개월 이내	• 접수 후 60일 이내	• 접수 후 60일 이내
본조사 보완	• 요구 후 3개월 이내	-	-
재조사 신청	• 통보 후 30일 이내		

- 관련 법규들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논의를 통하여 절차 및 기간 등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연구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

- 과기부, 교육부는 전문가에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조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문가 구성 중 외부 위원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최소 1명 이상의 외부 위원만 조사위원회에 포함하면 됨

- 제척 기준에 있어서 교육부와 산업부에서는 공동연구를 한 사람도 조사위원회에 제척기피 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해당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관련 판단을 내리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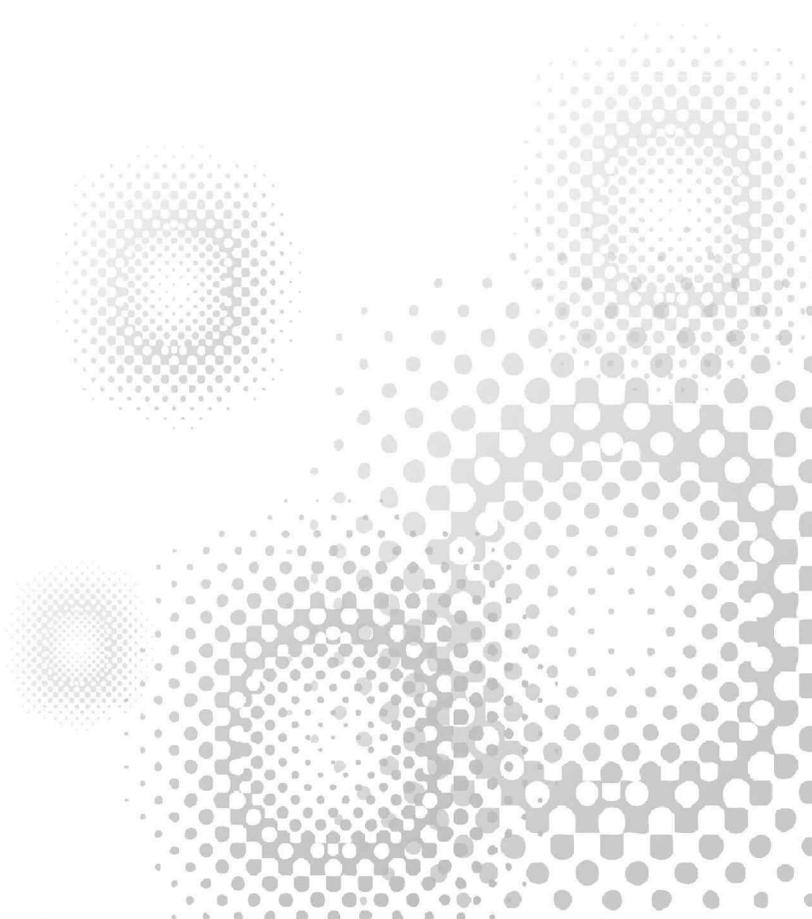
〈표 4-10〉 부처별 조사위원회 구성

구분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위원명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전문가	• 최소 3명 (위원의 50% 이상) • 외부 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		• 최소 3명 (위원의 50% 이상)
외부 위원	• 최소 2명 (위원의 30% 이상)		• 최소 1명 (위원의 20% 이상)
제척기준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보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본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제5장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정책 동향



제1절 개요

■ 글로벌 연구 생태계에서의 연구윤리 정책 동향 파악

- OECD 등 국제사회의 연구윤리·연구진실성 확보 및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공통 규범에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의 책임 및 권한을 제시
 - 싱가포르 성명서는 개별 연구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자의 책임을 제시했으며, 몬트리올 성명서는 연구원 및 기관 담당자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 및 권한 등을 제시함
 - 연구진실성에 대해 규범의 범위나 원칙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정은 우수한 연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를 위한 일련의 원칙과 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함
 -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에서는 연구윤리 규범에 연구진실성 확보,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관리, 인간·동물 대상 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규범들이 포함됨
- 해외 주요국에서는 연구의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연구진실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되고 있음
 - OECD는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진실성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연구보안에 대한 원칙 및 지침 등을 마련
 -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협력 및 보안에 있어서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 및 산·학·연과의 협력 및 국제적인 정보 교환의 촉진이 필요함
- 학술 및 R&D 환경의 급변에 따라 최근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 학술활동, 연구실 내 괴롭힘 등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면 연구에서 용인된다는 인식이 아닌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인식의 확대 및 연구현장의 자정작용이 필요
 - 연구현장 자정작용 지원을 위한 연구윤리 이슈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이슈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

제2절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통 규범

1. 연구진실성을 위한 세계학술대회

■ 싱가포르 성명서³⁸⁾(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 성명서는 제2회 ‘연구진실성을 위한 세계학술대회(World Congress on Research Integrity)’에 참가한 51개국 340명의 공동 노력의 산물로, 2010년 9월 22일에 발표됨
 - 다만,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가나 단체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이 선언을 바탕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공식 정책이나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연구 무결성(Research Integrity)에 관한 싱가포르 성명서의 발행은 정부, 조직 및 연구자가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연구 무결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표준, 코드 및 정책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 성명서에 요약된 원칙과 책임은 전 세계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연구를 후원하는 모든 조직 및 의사 결정에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
- 원칙에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의 정직성, 연구 수행에서의 책임성, 공동연구에서의 상호 존중과 공정성, 연구자로서 사회에 대한 의무의 준수가 포함됨

〈표 5-1〉 싱가포르 성명서 내 연구자의 책임

순번	분류	내용
1	진실성	연구자는 수행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규정의 준수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증명하고 추후 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과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4	연구 기록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증명하고 추후 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과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5	연구 결과	연구자는 연구성과의 우선권과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즉시 데이터와 연구의 결론을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6	저작권	연구자는 모든 종류의 연구성과 출판과 제안, 보고, 연구결과 발표에 있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연구에 기여하여 저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리고 그들만이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8) Singapore Statement (2010),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순번	분류	내용
7	출판물에서의 감사 표시 (Acknowledgement)	연구성과의 출판물에서는 기록자, 연구비 지원자, 후원자 등 연구에 필요한, 그러나 저작권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름과 역할을 기록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동료 심사	동료 연구자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는 공정·신속·엄정하여야 하고 평가 과정에서 인지한 비밀은 지켜야 한다.
9	이해충돌	연구자는 연구제안, 출판, 전문가로서의 발언, 그리고 평가 활동에 있어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공지하여야 한다.
10	전문가로서의 발언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견해를 발언할 때에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 국한하여 발언하고 개인으로서의 견해와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11	부적절한 연구에 대한 보고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또는 연구수행에서의 부주의, 부당한 저자 표시, 상충하는 데이터의 누락, 왜곡된 방법을 통한 분석 등 부적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2	부적절한 연구에 대한 대처	연구기관, 학술지, 전문가 단체, 연구비 지원기관 등 연구와 관련된 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처리하고 선의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연구기록의 정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13	연구 환경	연구기관은 교육과 내부 정책 및 규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미칠 위험과 이익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 몬트리올 성명서³⁹⁾

- 2013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연구진실성을 위한 세계학술대회 3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국가, 기관, 학문 또는 공공-민간 또는 학계-기업 협력 등 부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공동 연구와 관련된 연구 무결성 측면에 중점을 둔 몬트리올 성명을 발표
 - 국가, 기관, 학문 및 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나, 이러한 협력은 규제 및 법률 시스템, 조직 및 자금 구조, 연구 문화, 교육 접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연구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구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진행 시 개인 및 기관의 연구 무결성 촉진을 위한 책임에 관하여 제시
- 공동연구에서의 일반적 책임, 공동연구 관리의 책임, 협력관계를 위한 책임, 연구성과의 책임으로 분류

39) Montreal Statement (2013), Montreal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in Cross-Boundary Research Collaborations.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표 5-2〉 몬트리올 성명서 내 연구협력을 수행하는 개인과 기관 당사자의 책임

순번	분류		내용
1	일반적 협력을 위한 책임사항	통합	협력하는 당사자들은 전반적인 통합연구를 하는 동안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신뢰	협력파트너의 각각의 행동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서로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3		목적	협력연구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고 행해져야 한다.
4		목표	협력당사자들은 연구의 목표가 같아야 한다. 목표의 변경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되고 동의되어야 한다.
5	협력을 위한 관리책임	소통	협력당사자들은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간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서로 자주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
6		합의	협력연구에 관련된 합의사항은 서로 간에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연구의 결과자료, 연구시행 동안 발견한 자료, 그리고 연구의 성과자료를 지나치고 불필요하게 배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7		법, 정책, 규정의 준수	협력연구에 대해 언급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따라야 하는 모든 법,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당사자들은 연구를 하기 위해 서로 상충되는 법, 정책, 규정을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조정할 지를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8		비용과 보상	협력연구의 비용과 보상은 협력자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9		투명성	협력연구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상호간의 동의 하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해지고 그 결과도 배포되어야 한다. 연구비의 출처는 완전히 투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10		연구자원의 관리	협력연구자들은 연구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였던 인간, 동물, 그리고 재정적 자원이나 다른 자원을 책임지고 활용해야 한다.
11		지속적인 점검	협력연구자들은 연구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가 완수되고 연구성과가 잘 배포되도록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5장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정책 동향

순번	분류		내용
12	상호관계에 대한 책임	역할과 책임	협력연구자들은 연구의 기획, 수행, 그리고 연구결과의 배포에 관련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서로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역할과 책임이 변경될 때마다 재협상되어야 한다.
13		관례적인 수행과 가정	협력연구자들은 관례적인 연구수행과 연구와 관련된 가정을 서로 솔직하게 협의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 전문지식과 방법, 그리고 통합연구 동안에 절충될 수 있는 관례적인 수행과정, 기준, 가정의 차이가 솔직하게 언급되고 협의되어야 한다.
14		갈등	협력연구자들은 개인간 혹은 기관간의 의견의 갈등, 의견의 불일치와 오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5		협력연구의 대표성	협력연구자들은 이들을 대표하여 누가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지를 합의해야 한다.
16		자료, 지적재산권과 연구기록	협력연구자들은 연구자료, 지적재산권, 연구기록의 사용, 관리, 배분, 소유에 대해서 연구시작 단계에서, 혹은 필요 시 추후에 합의해야 한다.
17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출판	협력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출판과 배포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연구시작 단계에서, 혹은 필요 시 추후에 합의해야 한다.
18		저작권과 사사	협력연구자들은 협력연구 결과의 저작권과 사사에 대해서 연구시작 단계에서, 혹은 필요 시 추후에 합의해야 한다. 연구를 도와주었던 협조자들, 특히 젊은 협력자들은 모두 적절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출판물과 다른 성과물에 도움을 준 모든 참여자들의 기여를 언급해야 한다.
19		책임질 수 없는 연구수행에 대한 반응	협력연구자들은 어느 연구원으로부터 행해진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혐의 혹은 무책임한 연구수행에 대해 언제든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력연구자들은 연구수행자의 잘못되거나 무책임한 연구수행이 의심되거나 인지될 경우 즉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20		책임	협력연구자들은 서로에 대해, 연구비지원기관에, 연구성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2. 유럽 아카데미 연합 (All European Academies, ALLEA)

■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 ‘연구 무결성을 위한 유럽 행동 강령(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은 모든 과학 및 학술 분야와 모든 연구 환경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위한 유럽의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
 - 유럽 과학 및 인문학 아카데미 연합인 All European Academies(ALLEA)에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11년에 처음 발표된 후 2017년에 주요 개정판이 발표됨
 - 유럽 위원회는 해당 강령을 모든 EU 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무결성에 대한 참조 문서 및 유럽 전역의 조직 및 연구원을 위한 모델로 인정함
- 설계, 방법론, 분석에 반영된 연구 품질 보장의 신뢰성(Reliability), 투명하고 공정하며 온전하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연구를 개발, 수행, 검토, 보고 및 전달하는 정직성(Honesty), 동료, 연구 참여자, 사회, 생태계, 문화 유산 및 환경에 대한 존중(Respect), 아이디어에서 출판까지의 연구, 관리 및 조직, 교육, 감독 및 멘토링,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기본 원칙으로 함
 - 4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연구 환경(Research Environment), 교육, 감독 및 멘토링(Training, supervision and mentoring), 연구 절차(Research procedures), 보호 조치(Safeguards), 데이터 관행 및 관리(Data practices and management), 공동 연구(Collaborative working), 출판 및 보급(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검토, 평가 및 편집(Reviewing, evaluating and editing) 등 보다 행동 지향적인 규범에 대한 내용을 포함
 - 특히, 개정판에서는 연구의 협력적 특성을 인정하여,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가 연구 무결성에 관한 기대치와 기준에 공식적으로 동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부정 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용될 프로세스를 갖출 것을 권고함

3.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Guiding Principles for Research Integrity

- 연구 무결성을 위한 APEC 지도 원칙은 APEC 경제 내에서 연구 무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 언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무결성을 위한 APEC 지도 원칙은 구속력은 없음
 - 연구의 국제 교류가 보편화 되고 있어 연구 무결성에 대한 일련의 원칙의 공유가 필요
 -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연구를 안내하기 위해 연구 노력에 관련된 연구자, 기관, 자금 제공자, 후원자 및 기타 사람들이 채택, 승인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기본 원칙에 대한 연구원의 책임, 기관의 책임, 자금 제공자 또는 연구 후원자의 책임을 제시함
 - 연구원과 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연구자금 제공자 또는 연구 후원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 무결성을 위한 지침과 위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연구 무결성 증진을 위한 환경 제공 및 정책 등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5-3〉 APEC의 연구 무결성을 위한 기본 원칙

순번	분류	내용
1	정직 (Honesty)	• 진실하고 기만적이지 않음
2	책임 (Responsibility)	•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의무를 다함 •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짐 • 관련 법규,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함
3	엄격함 (Rigour)	• 신중하고 철저하며 비판적이어야 함
4	투명성 (Transparency)	• 아이디어, 프로세스, 방법, 데이터, 조사 결과 및 결과를 공개 및 공유함 • 작업을 면밀히 조사할 의지를 보여줌 • 이해충돌의 공개 및 관리
5	존중 (Respect)	• 연구 노력, 가치, 문화, 의견 및 타인의 권리, 동물과 환경을 존중함
6	공정성 (Fairness)	• 편애나 편견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타인을 대하고 행동함 •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인정
7	다양성 (Diversity)	• 다양한 사람, 문화, 지식, 관점 및 경험을 인정하고 포용

4. OECD

■ 국제 공동연구 시 연구부정행위 조사 가이드라인 40)

- OECD는 2009년 국제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에 적용하기 위한 공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함
 - 국가간 공동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의 심화, 성과 압박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한 연구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적용하기 위한 처리절차를 마련
 - 국제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간 합의사항과 표준적 절차를 규정하여 제시
 - 각국이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국제 공동연구에서 규제할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조(fabrication of data), 변조(falsification of data), 표절(plagiarism)으로 국한함
 - 실제 부정행위 발생시 적용할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고, 부정행위 발생시의 처리 원칙을 담고 있는 국제 공동연구 계약서의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공개함

40) Investigating Research Misconduct Allegations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2009.04, OECD Global Science Forum

〈참고〉 국제공동연구 협약시 계약서에 포함할 표준모델

(Bollerplate Text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We, agree:

- to conduct our research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research integrity, as defined in the "Investigating Research Misconduct Allegations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A Practical Guide(www.oecd.org/sti/gsf) and other appropriate documents including: (specify the national codes of conduct and disciplinary or national ethical guidelines that apply)
- that any suspected deviation from these standards, in particular alleged research misconduct, will be brought to the immediate attention of (all designated contact point(s)) and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o be filled in with the body with primary responsibility), while respecting the laws and sovereignty of the states of all participating parties;
- to cooperate in and support any such investigations; and
- to accept (subject to any appeal process) the conclusions of any such investigation an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무결성 및 보안에 대한 보고서⁴¹⁾(’22.6)

- 개방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과학 정보 및 데이터의 보급, 연구 자료의 공유는 글로벌 과학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으로, 보고서는 국가가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무결성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장 사항 제공
 - OECD 국가는 무단 정보 전송과 연구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심각한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협이자 과학적 연구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13개 OECD 국가 그룹에서 수집한 공개 문서 및 2개의 국제 워크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연구 협력을 촉진하면서도 국가적, 경제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우수 사례를 분석
 - 정부, 연구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술 협회 및 정부 간 조직 등 국제 연구 생태계의 여러 주체에 연구 무결성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분산
 - 정부와 예산 지원 기관은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대학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저감하는 도구를 개발, 학술 단체와 국제 기구는 홍보 활동과 관련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보고서는 워크샵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주체가 연구생태계의 진실성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과학적 연구와 국제 협력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 보안 고려 요소를 국가적, 기관적 연구 진실성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것

41) OECD (2022), Integrity and Security in the global research ecosystem

- 연구 리스크 관리에서 비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촉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한하는 한편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것
-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산업 및 기관과 협력하고 연구 진실성과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할 것

〈표 5-4〉 OECD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무결성과 보안 강화 방안

분류	내용
과학 연구의 자유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안보 문제에 대해 비례적인 위험 관리 접근을 취하면서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국제적 이동성과 외국인 연구원의 채용은 국제 협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 • 연구기관과 대학은 과학연구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환영하는 포용적인 환경 유지
국가 및 기관 프레임워크에 연구 보안 고려사항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및 위험 관리는 연구 무결성의 필수 측면으로서 기관 문화 및 프로세스에 통합되어야 함 • 국가 연구 무결성 사무소의 역할을 확장하거나 연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정부 내 연구 보안을 위한 전담 연락 지점 또는 전문 센터 설립
연구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비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학 및 전문 협회의 책임 있는 자기 관리를 장려하고 잠재적 위험을 이해, 식별 및 완화하기 위한 역량 구축 지원 • 정부,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은 보안 전략의 성숙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이니셔티브 또는 조치 조정
이해충돌 및 직무충돌과 관련하여 개방성과 투명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은 연구자가 이해충돌 및 직무충돌과 잠재적인 연구 보안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선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는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실사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모니터링 진행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불필요한 관료주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절차는 기존 절차 또는 구조와 조화 마련 •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자들이 정책 환경을 탐색하고 새로운 규정 및 지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프로세스 수립
연구 무결성 및 보안에 관한 국제 정보 교환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은 연구 무결성 및 보안과 관련된 문제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제 대화 조직 • 연구 무결성 및 보안 문제는 국가 정부,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간의 과학 협력 계약을 개발할 때 명시적으로 고려 • OECD 및 기타 국제기구에는 연구 무결성, 연구 보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교환 및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협력

제3절 주요국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현황

1. 미국

■ 과학적 진실성 정책 (Federal Scientific Integrity Policies: A Primer)

-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연방기관의 과학적 진실성(scientific integrity)을 보장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과거 위반 사례와 향후 고려사항을 논의(’22.11.)
-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2010년 발행한 각서의 지침에 따라 20개 이상의 연방부처와 기관이 과학적 진실성을 보호할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함
 - 각서는 과학적 진실성 기반, 대중 커뮤니케이션, 연방 자문위원회 활용, 정부 소속 과학자와 공학자의 전문성 개발을 4대 원칙으로 제시
 - 각서에 따라 과학적 진실성 정책이 없는 연방기관은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과학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은 최고 과학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의 구현 및 개선을 감독해야 함
 -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적 진실성 노력을 재확인하고 구축하는 각서*42)를 발표

〈표 5-5〉 바이든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각서	주요 내용
과학 진실성, 증거 기반 정책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 교서 (Memorandum on Restoring Trust in Government Through Scientific Integrity and Evidence-Based Policy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역할 확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범부처 태스크포스 마련 • 연방기관 과학적 진실성 정책 수행 • 근거기반 정책 결정 (증거기반 정책법에 의거) • 기관 최고 과학담당자 임명 명시 • 과학자문위원회 역할 (독립적 과학 자문 제공)

42) The White House, 2021.01.27., Memorandum on Restoring Trust in Government Through Scientific Integrity and Evidence-Based Policymaking

- 주요 위반 사례로는 특정 정치 성향의 연방자문위원회의 위원 비중 증가, 특정 과학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불리한 조치, 이해충돌 또는 적대적 견해를 가진 인사 임명, 과학적 문서의 부적절한 편집 등이 있음
 - 2006년 내무부 감사실(DOI OIG)은 부차관보가 멸종위기종보호법(ESA)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 및 생태보고서를 바꾸도록 어류 및 야생동물국(FWS) 전문가를 괴롭히고 모욕을 준 혐의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ESA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피해를 주었음을 밝힘
 - 2019년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국립기상국의 앨라배마 버밍엄 지부가 허리케인 도리안이 앨라배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트위터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백악관 비서실장과 상무부 장관이 압력을 가한 결과로 드러남
 - 트럼프 정부가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과학적 업무를 정치화하거나 간섭하려 한다는 우려를 2020년 언론에서 제기함
 - 2022년 언론은 아트라진 등 제초제에 대한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후 및 환경부 국장이 상당한 압력과 괴롭힘을 가했다고 보도함
- 2016년 국방분석연구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PI)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각서(10)에 따라 개발된 연방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기관별로 차이가 크며, 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8가지 요소를 제시
 - 1) 과학적 진실성이 기관의 임무에 중요한 이유에 대한 맥락 제공
 - 2) 과학적 진실성 정책이 적용되는 사람과 활동의 범위
 - ※ 일부 기관에서는 연방 직원 외 계약자 및 수혜자가 포함됨
 - 3) 정책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정의
 - ※ 몇몇 기관은 과학적 진실성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몇몇 기관은 용어 자체를 정의하는 대신 과학적 진실성의 위반을 정의함
 - 4)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책임자 지정
 - ※ 일부 기관에서는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가장 높은 비정치적 공무원에게 할당했지만, 일부 기관은 수석 과학자에게 책임을 할당함
 - 5) 과학적 진실성 및 절차의 위반 혐의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책임자 지정
 - 6) 과학적 행동강령, 연구부정행위, 이해충돌 또는 데이터 품질과 같은 관련 정책의 참고
 - ※ 관련 정책과의 관계에 따라 과학적 진실성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정책을 과학적 진실성 정책에 병합한 반면, 일부 기관은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별도로 개정
 - 7) 정책에 대한 법적 권한 인용
 - 8) 과학적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또한, 외부 전문가들은 연방기관들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이 기관별로 범위와 구체성 면에서 다양하다는 점에서 통일성과 집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 개발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

〈표 5-6〉 과학적 진실성 정책 개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내용
정책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원(GAO)은 대부분의 연방기관이 과학적 진실성 정책의 구현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적 • 환경보전청(EPA)의 감사실(OIG)은 EPA가 과학적 진실성 정책의 잠재적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의무 교육이 모니터링되지 않았으며, 연례 보고가 시기적절하지 않았음을 발견 • 농무부(USDA)의 OIG는 기관 내 과학자들이 과학적 진실성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과학적 진실성 관련 교육을 평가할 것을 권장
위반 혐의의 보고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원 2019년 보고서에서 항공우주국과 에너지부가 위반 혐의를 보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문서 과정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지적 • 연방 과학적 진실성 위반 혐의는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이 법이나 제도를 통해 명시되어야 함
기관 내·외부 과학적 진실성 정책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OSTP의 각서는 연방기관간 정책 개발 및 구현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여러 연방 기관이 관련된 과학적 진실성 문제 해결 및 조율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국립행정학회는 기관 간 과학적 이슈를 소통할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을 권고
과학적 진실성 책임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과학적 진실성 정책 이행에 대해 명시적인 책임을 지는 과학적 진실성 책임자를 신규로 임명하거나 지정할 것을 권장 •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감독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기관의 전반적인 과학적 진실성 문화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정책 감독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과학적 진실성 위반 혐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과학적 진실성 태스크포스 보고서(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과학적 진실성 태스크포스(Scientific Integrity Task Force)*는 '22년 1월 미국 정부의 과학 진실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2021년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과학 진실성, 증거 기반 정책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 교서에 따라 마련된 태스크포스

- 기존 연방기관의 정책은 이전 행정부 조치의 원칙과 지침에 부응하는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을 강화하여 과학의 수행, 관리, 소통 및 활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수행, 관리, 소통 및 활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에서 과학적 진실성 문화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연방기관은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정책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관행이 필요하므로 모범 사례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
- 과학적 진실성 태스크포스는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6대 원칙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추가 원칙을 제시함
- 과학을 향상시키는 정당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됨
 - 정부의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은 정부 전체에서 이루어지므로 과학적 진실성 정책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근거, 과학 및 기술의 생산, 분석, 소통 및 활용에 관여하는 모든 연방기관 및 부서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관 직원, 계약자 및 정치적 지명자 등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 정책 결정 중에 과학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과학자들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과학 공유의 투명성은 강력한 지식 생성을 뒷받침하고 미국 대중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므로, 연방 과학자들은 원할 경우 연구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 가능해야 함
 -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위반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윤리 위반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함
- 태스크포스는 다음 단계로 2021년 대통령 각서에서 요구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반복적인 개선을 알리고 지원할 계획
- 해당 프레임워크에는 OSTP와 기관이 과학적 진실성 정책의 설계 및 구현을 알리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포함되며, 작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연방기관 전체에 적용할 과학적 무결성의 정의에 대한 합의임
- 또한 태스크포스는 공평하고 포괄적인 과학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학 기반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과학적 진실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성별, 인종, 민족, 지리 및 기타 특성 측면에서 미국 대중의 전체 범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접근 방식에 포함할 계획
 - 소셜 미디어, 타운홀, 학습 교류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소외된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일반 대중의 참여 및 포함을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

■ 미국 내 연구기관의 보안과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⁴³⁾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해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연구기관의 보안과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20년 06월 23일 발표함
- 개방성과 투명성, 진실성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과 해외의 기여는 미국 연구기관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개인이나 정부가 이러한 핵심 원칙을 어기면서 미국의 연구기관의 보안과 진실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이해가 충돌되는 계약이나 업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연구기관이 이를 공개하는데 실패하거나, 동료 검토 과정을 왜곡하거나,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에서 탈취하거나, 지원금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등 일부 정부의 경우 미국의 R&D 시설을 이용해 특허나 기술이전으로 지적 재산을 빼돌리거나 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본국으로 귀국시켜 이 기술을 보급하도록 만들고 있음
 - 2020년 국립보건원(NIH)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임상 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89개 연구기관의 189명의 과학자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고되었음
- 본 가이드라인은 개방성과 보안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2019년 5월, 연구환경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Research Environment, JCORE)를 발족하고 연구 보안, 연구 행정 업무 절감, 연구의 엄밀성과 무결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연구 환경의 네 가지 과제에 대응하고자 함
 - 2019년 11월 백악관 서밋(White House Summit)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의 주요 인사가 연구환경합동위원회(JCORE)와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관계된 유학생이나 연구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무부(DOS), 법무부(DOJ) 등 연방기관들도 외국 국가의 영향력을 차단할 정책을 시행 중임

■ 연구보안과 연구자 책임에 대한 원칙⁴⁴⁾

-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국가 안보와 개방성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각서 33호(NSPM-33)*에 대한 효과적이고, 철저하고, 일관된 시행방안 논의
 - NSPM-33은 이전 행정부가 발표한 각서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R&D를 외국 정부의 간섭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도록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 발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 NSPM-33의 시행 지침은 크게 공개 정책, 감독 및 집행, 연구 보안 프로그램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43) OSTP (2020.06), Enhanc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America's Research Enterprise

44) OSTP (2021.08), Clear Rules for Research Security and Researcher Responsibility

〈표 5-7〉 NSPM-33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33)의 내용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된 대학 연구 환경의 착취 및 지적 재산 도용을 포함하여 부당한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과학 연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커뮤니티의 개방성을 촉진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 • 선의의 연구자가 쉬고 적절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수립 • 정책이 외국인 혐오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함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연방 연구 자금으로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수여받은 연구 기관이 사이버 보안, 해외 여행 보안, 연구 보안 교육, 수출 통제 교육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 보안 프로그램을 구현했다는 인증을 요구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구보안과 연구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위원회, 동료 내각 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기타 연방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침을 마련하는 중임
 - 향후 NSPM-33 시행 지침에 포함될 3가지 원칙을 미국의 안보 보호와 개방성, 명확한 정책의 수립, 외국인 혐오나 편견 방지로 제시

〈표 5-8〉 NSPM-33 시행 지침 작업 원칙

원칙	내용
미국의 안보 보호와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발견의 핵심이자 미국의 국가적 특성인 개방성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오남용을 막아야 함 • 개방성은 미국으로 향하는 세계의 우수한 과학 인재를 환영하고 끌어들이며, 과학적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반면 중국 등 일부 외국 정부가 미국의 연구 및 기술을 불법적으로 습득하거나 노골적으로 도용하고자 힘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러한 위협은 심각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음
명확한 정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폭넓게 높이고, 어떤 관계나 직위, 예산 출처가 잠재적으로 이해 충돌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 • 정책이나 과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파악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를 원함 • 연구자가 간단한 시스템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고 정기적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여 모든 연방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임
외국인 혐오나 편견을 부추기지 않는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은 근본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오히려 세계 최고의 과학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역효과만을 낳기 때문에 편견에 입각한 정책이나 절차를 절대적으로 거부

2. 영국

■ 영국 연구진실성위원회 (UK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UK CORI)

- 영국 연구진실성위원회(UK CORI)는 연구 진실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2018년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영국 연구 진실성 사무소(UKRI)가 3년 동안 독립 위원회 형태로 주최함

* 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 UKRI가 영국 연구 진실성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권고

- 위원회는 영국 전역과 국제적으로 연구 진실성을 촉진하며, 체계적 압력이 연구 진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구축함

- 또한 연구 진실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Concordat to Support Research Integrity)*을 통해 진행 상황을 개선하고, 영국 연구 진실성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함

* 우수한 연구 수행 및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2012년에 첫 번째 협약이 발표된 후 2019년 10월 25일에 최신 개정됨. Universities UK, Cancer Research UK,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UK Research and Innovation 등 다양한 연구 기관이 협약을 하고 있으며, 연구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엄격함과 진실성을 유지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검토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연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위원회는 고등 교육 기관, 연구기관, 공공, 민간 등을 포함한 연구생태계와 광범위하게 협력하며, 출판, 정부, 연구 정책 및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야와 영역에서 의장과 회원이 임명됨

■ 신뢰할 수 있는 연구 -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Trusted Research Guidance for Academics)

- 영국의 CPNI(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는 국제 연구 협력의 무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학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지침을 발표함

-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 파트너가 국제 협력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잠재적인 절도, 오남용 또는 착취로부터 연구 및 직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함

〈표 5-9〉 연구 보호를 위한 방법

구분	내용
연구 파트너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 새로운 연구 및/또는 자금 지원 협력을 고려할 때 재정, 윤리적, 법적, 국가 안보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한 실사 수행 • (이해충돌) 협력 연구 및/또는 자금 지원 파트너 간의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유의 • (분리) IP, 데이터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이버 보안 위험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액세스 제어, 무단 접근 감시 및 방지가 필요

구분	내용
법적 프레임워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제) 연구가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받는 수출 통제 대상 여부 확인 • (법률 검토) 해외 연구 또는 자금 제공자와 협력 시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프레임 워크가 계약 또는 파트너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검토 •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및 정보 보호 책임 인식
연구원의 보안 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보안) 온라인에서 데이터 및 연구를 사용하고 공유 시 기관에서 연구원을 지원 • (해외 연구원과의 협업) 방문 연구원이 기밀 유지 및 비공개와 관련하여 기관 정책을 준수하고, 적절한 비자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 (해외 컨퍼런스 참석 시) 해외 컨퍼런스 참석 시에도 보안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

3. 중국

■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⁴⁵⁾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2년 3월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
 - 과학기술윤리는 과학연구,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활동 전개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이념과 행위규범이자, 과학기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이나,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는 여전히 체제와 제도 미비, 분야 발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존재, 과학기술 혁신발전의 실제 수요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
 - 과학기술윤리 제도를 완비,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능력 제고, 과학기술윤리 리스크의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하여 강화방안을 마련
 - (강화방안) ①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체제 정비, ②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제도보장 강화, ③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규제 강화, ④ 과학기술윤리 교육 및 홍보 심층 전개를 제시

45)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 (2022.03),《关于加强科技伦理治理的意见》

〈표 5-10〉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⁴⁶⁾

강화방안	세부 방안	내용
①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체제 정비	정부 과학기술윤리 관리체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국적인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구축사업에 대한 지도와 총괄추진을 담당 •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일상 업무 담당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원기관) 직책분담에 따라 과학기술윤리 규범의 제정, 심사 감독규제, 홍보교육 등 관련 사업 담당 • (지방/관련 산업 주무부처) 직책 원한과 예측관계에 따라 현지, 해당 시스템의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
	혁신주체의 과학기술윤리 관리주체 책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연구기관, 의료보건기관, 기업 등 기관은 과학기술윤리 관리주체 책임을 이행, 과학기술윤리 일상 관리를 강화 • 생명과학, 의학,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은 연구내용이 과학기술윤리의 민감한 영역과 관련되는 경우, 과학기술윤리위원회를 설립
	과학기술류 사회단체 역할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학회, 협회, 연구회 등 과학기술류 사회단체는 과학기술인력이 능동적으로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동원, 대학, 연구기관, 의료보건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대중의 과학기술윤리의식 증진
	과학기술인력의 자각적인 과학기술 윤리 요구사항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인력은 능동적으로 과학기술윤리 지식을 배워 과학기술윤리 의식을 증진, 과학기술윤리 원칙을 자각적으로 실천, 과학기술윤리 요구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능동적으로 보고하고 완강히 제압
②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제도 보장	과학기술윤리 규범과 표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학, 의학, 인공지능 등 중점분야의 과학기술윤리 규범,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윤리 관련 표준을 보완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관리 제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 규제 직책을 확정, 과학기술윤리 심사/리스크 처분/위반 처리 등의 규칙 절차를 정비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법치화 수준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윤리 감독 규제, 위반 단속 등의 거버넌스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관련 입법에서 과학기술 윤리 요구사항을 구체화 • 생명과학, 의학,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윤리 입법 연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중요한 과학기술윤리 규범을 국가 법률/법규로 즉시 격상하도록 추진
과학기술윤리 이론 연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싱크탱크, 사회단체, 과학기술인력 등의 과학기술윤리 이론 탐구를 지원, 과학기술 혁신에서 윤리문제에 대한 전망성 연구를 강화 • 국제 과학기술윤리 중대 의제 검토와 규칙 제정을 적극 추진·참여 	
③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규제 강화	엄격한 과학기술윤리 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실험동물과 관련된 과학기술활동은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의 과학기술윤리 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기타 기관의 과학기술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 과학기술윤리위원회는 과학/독립/공정/투명 원칙을 견지,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과학기술윤리 심사, 감독 및 지도를 전개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04.15.),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강화방안	세부 방안	내용
	과학기술윤리 감독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방, 관련 업계 주무부처는 본 지역, 본 시스템의 과학기술윤리 감독 규제의 틀과 제도적 규범을 세분화, 각 기관의 과학기술윤리위원회와 과학기술윤리 고리스크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 재정 자금으로 설립된 과학기술계획은 과학기술윤리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지침서 작성, 프로젝트 설정 승인, 프로세스 관리, 과제 완료 검수, 감독 평가 등 모든 단계에 대해 감독규제 • 국제협력연구 활동에 대한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규제를 강화
	과학기술윤리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문은 대학, 연구기관, 의료보건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과학기술윤리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제를 개선하도록 견인하고, 신흥과학기술 발전 프런티어 동향을 추적
	과학기술윤리 불법행위의 엄격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연구기관, 의료보건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은 과학기술윤리 불법행위를 적시에 능동적으로 조사,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책임을 추궁
④ 과학기술윤리 교육 및 홍보 심층 전개	과학기술윤리 교육 중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윤리 교육을 관련 전공 학과의 전문대 포함 대학과 대학원생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대학에 과학기술윤리 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
	과학기술윤리 교육훈련 메커니즘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윤리 교육훈련을 과학기술인력 입사훈련, 과학연구임무 담당, 학술교류 검토 등의 활동에 포함시켜 과학기술인력이 스스로 과학기술윤리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책임을 지는 연구와 혁신을 전개하도록 유도
	과학기술윤리 홍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대중을 위한 과학기술윤리 홍보를 전개하여 대중이 과학기술윤리 의식을 증진하도록 견인하며, 과학기술윤리 문제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도록 추진

■ 과학기술윤리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⁴⁷⁾

- '21년 12월 17일,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23차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윤리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심의 및 승인함
- '19년 7월 '국가 과학기술윤리 위원회 구성 방안'이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동 위원회는 윤리 제도 정비, 윤리 관리감독 및 심사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윤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하여 최초의 과학기술윤리 관리 지도성 문건인 <과학기술윤리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22.3)하고 시행 중에 있음
 - 최근 2년간 과학기술윤리 관리와 관련된 입법에 박차를 가해 과학기술윤리 관리에 관한 여러 법률이 정식 시행

47) 《求是》杂志 (2022.10.17.), 王志刚:完善科技伦理治理体系保障科技创新健康发展

〈표 5-11〉 중국 과학기술윤리 관련 입법

법률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 신약, 의료 기기 또는 새로운 예방 및 치료 방법의 개발과 인간 유전자 및 인간 배아와 관련된 의학 및 과학 연구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 기술 윤리 조항이 추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인간 배아 복제 및 유전자 편집 윤리 위반에 대한 새로운 형사 기준 및 형사 책임 조항 추가
중화인민공화국 생물 안전법	• 생명공학 연구, 개발 및 응용 활동에 대한 윤리적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 기술진보법	•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관련 요구 사항을 더욱 정교화하고 추가했으며,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

- 중국-EU 과학기술혁신 협력 로드맵에 과학기술윤리 분야 미래 협력 계획 작성, WHO, UN 등의 국제 과학기술윤리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과학기술윤리는 과학기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 규범이며 다자가 참여해 공동 관리하는 체제 메커니즘으로 건전화할 것을 강조
 - 과학기술윤리 관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 강화
 -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윤리와 과학기술 안보의 통일성 확보
 - 다자가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공동 관리하는 과학기술윤리 관리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 추진
 - 과학기술윤리 관리의 제도 및 규범 수립 추진
 - 과학기술윤리 심사 및 감독관리 수준 향상
 - 과학기술윤리 교육 및 홍보
 - 과학기술윤리 관리 연구진 구축
 - 국제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

제4절 연구윤리 주요 이슈 현황

1. 부실학회⁴⁸⁾

▣ 부실학회 정의 및 특징

- 언론에 한국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가 문제 등으로 연구계에 대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옴



[그림 5-1] 부실학회 관련 보도⁴⁹⁾

- '14년~'18년 가짜 국제학술대회 의혹이 제기된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와셋)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1,317명인 것으로 드러남
- '17년~'21년 한국연구재단의 R&D 지원을 받은 SCI급 논문 12만 6,505편 중 의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2만 103편으로 1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⁵⁰⁾
-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를 부실학회로 표현
 - 국제사회에서는 부실 학술단체가 무엇인지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정당한 학술단체처럼 보이게 하여 연구자를 속이고 연구자의 노력을 약탈하기 때문에 predatory(Hijacked, Fake, Bogus) Publisher(Journal/Conference)라고 명명
- 학술논문을 구독료의 장벽 없이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 운동의 취지를 악용하여 저자로부터 논문게재료를 챙기는 약탈적 학술단체가 등장함
 -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주로 구독기반 유료 저널로 출판사가 저자에게 저널 출판비용(APCs, Article Processing Charges)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Peer Review의 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음

48) 가짜학술대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부실학회'로 표현

49) mbc, 2018.07.19., 돈만 내면 가짜 논문으로도 참가...황당한 국제학술대회

50) 한국일보, 2022.10.18., 정부 지원받아 '부실 의심 학술지' 논문 게재 폭증, 1위는 서울대... 5년간 총 649억 게재료 추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출판사가 저자에게 APCs를 받고 해당 논문을 온라인으로 개방하는 Open Access 출판모델의 등장으로 이를 악용해 제대로 된 동료심사 없이 저자로부터 고액의 APCs만 받아 챙기는 의심 학술지가 등장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수준 낮은 OA 학술지를 양산
- 부실학술지는 연구성과물을 훼손하고 연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학술정보 접근성 확대를 도모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오픈액세스(OA) 패러다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연구자들에게 임용, 승진, 과학공동체 내의 인정 등과 같은 혜택을 주는 연구계의 연구업적평가가 논문의 질(영향력)보다는 양적으로 평가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이 부실학회 참가의 원인 중 하나이며, 부실학술지는 연구실적 평가의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2018년 8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주요 원인으로 연구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연구사업 평가 때 학회 참석 같은 양적 평가지표가 사용되는 제도의 문제도 많이 지적됨
 - 설문에 응답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유사학회 참석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연구자와 연구사업 평가 때 잘못된 성과물(학회 참석 횟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23%), 연구윤리 측면에서 연구부정 행위를 부추기고 조장할 수 있다는 점(20%) 등이 지적됨
 - 관련 부처와 기관의 조치와 대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65%)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부실학회 대응 현황⁵¹⁾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부실학회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접근하였으며, 국립보건원(NIH) 등은 연구자에게도 자발적인 자성 촉구
 - FTC는 논문 투고 저자를 소비자로 간주하여 대표적인 부실학회인 오믹스의 출판 및 학회 운영 행위가 저자들을 상대로 한 기만적·사기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6년 8월 오믹스를 제소
 - NIH는 2017년 3월 NIH 지원을 받는 연구결과는 신뢰할만한 학술지에 투고할 것을 연구자에게 권고*함
- * Statement on Article Publication Resulting from NIH Funded Research (2017.03.11.)
- (독일) 연구윤리 분야를 담당하는 독일연구재단(DFG)이 부실학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부실학회 문제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개정
 - 권고안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은 DFG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 또한,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에서 논문 수를 제외하여 논문 수 실적 압박을 줄이므로써 부실학회 퇴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51) 국회입법조사처, 2019.10.11.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5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부실학회 문제 대응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관리, 교원 업적·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질적 평가로의 전환 등을 담고 있음
 - 부실 의심학회를 신고·검증하는 학술정보공유 플랫폼인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SAFE(Scholarly ecosystem Against Fake publishing Environment)를 개발·운영하고 있음

2. 괴롭힘(갑질) 행위

■ 괴롭힘(갑질) 이슈

-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대한 교수의 갑질, 성폭력 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35개 국립대에서 최근 3년간(2017~2019년) 대학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391건 발생했으며 특히 교수와 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⁵²⁾
 -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임
 - 국회에서는 입법적 해결책으로 성비위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로 추진되고 있음



사제 관계에서 불거지는 '갑질' 유형

교수-대학원생 간 인건비 횡령

• 교수 또는 랩(lab)장이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지원 및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지급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행위

교수-대학원생 간 논문 도용 등 연구부정행위

•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논문이나 연구를 대신하게 하고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인 등을 저자 또는 공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 지도학생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대학원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대학원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수수를 하는 행위

•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에게 과도한 양의 논문과 서적을 스캔하게 하는 등의 행위

자료: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출처: (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0715/72496233/2>

(우) <https://m.segye.com/view/20190522512276>

52) 학생이 교수로부터 성희롱·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은 2017년 10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3년 새 2.2배(10건 → 22건) 늘어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2015년 한 대학교수가 슬리퍼로 대학원생 제자의 따귀를 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인분까지 먹여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
-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학문 탐구의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을 계기로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됨

❑ 괴롭힘(갑질) 대응 현황

- (미국) 연구지원기관에서 성희롱 및 기타 괴롭힘 행위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보할 수 있는 경로 등을 마련

<p>https://www.nsf.gov/od/odi/harassment.jsp</p>	<p>https://www.nih.gov/anti-sexual-harassment</p>

- NSF는 해당 혐의가 밝혀졌을 경우, NSF가 편당한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책임자 교체, 연구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
- NIH는 해당 혐의를 지역경찰서, 관련 조직 또는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혐의가 밝혀졌을 경우 연구기관에 연구자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보조금 지급 시 조건을 설정하거나, 중단,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영국) 웰컴트러스트는 동료를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진에게 보조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2018년 6월 1일부터 도입

* 괴롭힘(bullying)은 취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훼손 또는 위협적으로 권력을 오용하는 것이며 괴롭힘(harassment)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모욕적 또는 굴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의미함

- 지원 대상 기관은 괴롭힘 및 괴롭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적시에 공정한 방식으로 혐의를 조사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

- 연구 제재는 연구책임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웰컴 트러스트의 지원을 받는 박사 과정 학생을 감독하거나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며, 해당 연구기관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기관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조직 전체의 자금 지원 중단이 포함됨
- 실제로 웰컴 트러스트는 괴롭힘 규정에 따라 런던 암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자로부터 지원금 350만 파운드(미화 45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를 위한 연구윤리규정을 각 연구기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하여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형 개발 시범사업을 운영 중
 - 과기부는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2022년 1월 마련한 바 있음 (2022년 5월 개정)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규범 및 안전장치 구축

-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 기구는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를 위한 일련의 원칙과 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나아가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논의
 - 연구를 수행, 관리, 소통 및 활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에서 과학적 진실성 문화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 국제기구 등의 연구진실성 관련 강령 등은 연구자를 규제하는 구속력이 있는 방향보다 연구 환경에 대한 자율 규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수립

■ 국제협력 및 보안에 있어서의 연구진실성 확립

-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 보안(research security)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되고 있으며, 국제 협력 및 보안에 있어서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
 - OECD에서는 국제 협력을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보고, 광범위해지는 국제 협력에 따라 보안에 대한 사항이 연구 진실성 및 과학적 책임을 고려하는 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바 있음
 - 미국은 연구 보안과 연구자 책임에 대한 원칙에 대하여 '21년 8월 발표하였고, 영국의 CPNI는 연구 보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연구지침을 발표함
 -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 탈취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보안 (research security)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자들이 연구 보안 및 연구진실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부실학술지 등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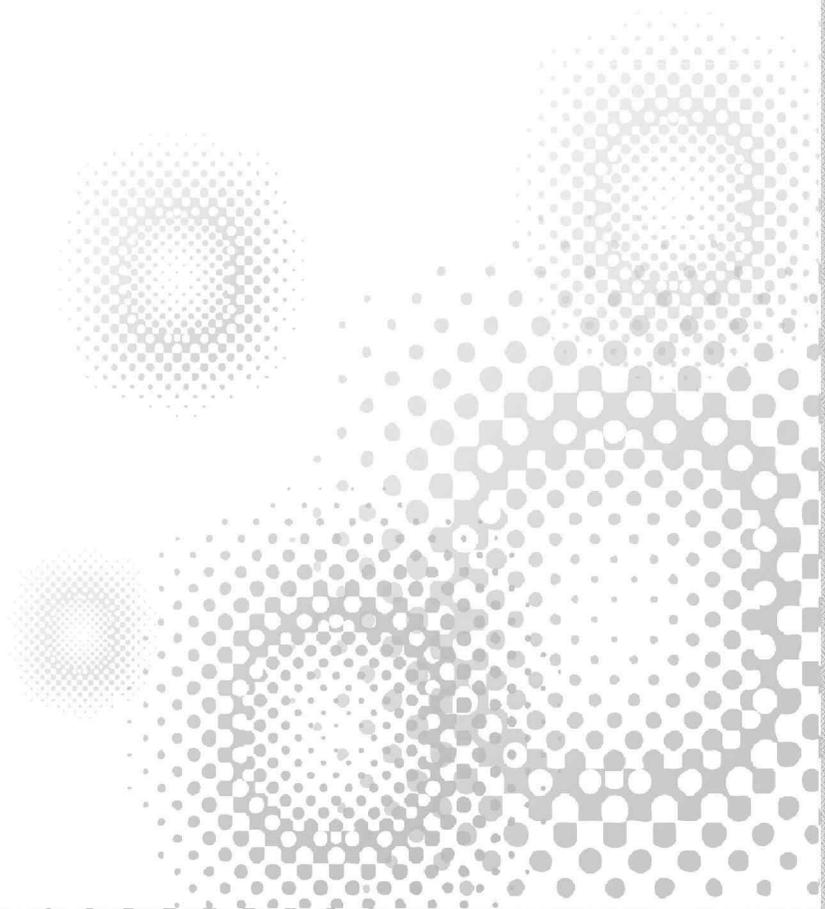
-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연구윤리 이슈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윤리 규정 마련, 관련 교육 강화와 동시에 이슈 발생 시 이를 제보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
 - 연구자들이 양적 지표에 연연하지 않도록 연구성과 위주의 과제 관리 지양 및 과잉 보상 체계 완화 등으로 도전적·창의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연구현장의 자정작용 지원을 위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문화 형성을 위한 연구윤리 이슈 관련 소통의 장 마련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제6장



결론



■ 연구 종합 및 활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산·학·연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발간
 -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법령 해설과 이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방안 제시
 - 연구자의 경우 사전이해관계 신고·회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
 - 연구기관의 경우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재직자 관련 수의 계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해충돌 대응체계 및 연구자·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의무와 관련 양식을 제시
-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보완을 위한 연구현장의 자체 연구윤리 지원 현황조사 및 자율적 연구윤리 지원 우수사례 등 발굴
 -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체계·절차,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절차 등의 항목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22.10.11~11.11)에 대학, 출연(연), 특정(연) 및 전문(연) 등 총 104개 기관이 응답
 - 연구윤리 전담 부서와 담당자의 경우 대부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전담 인력은 평균 0.4명), 세부 항목 중에서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분야 담당 인력(0.76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 연구윤리 규정,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의 경우 응답 기관 대부분 상위 규정 내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제1항 각호의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22년 5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책 수립이나 현장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대학에서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부실학회 및 학술지, 이해충돌 사례 해석,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안함. 향후 이러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연구환경 및 윤리의식의 변화에 따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수사례 선정의 경우에는 고려대 등 총 14개 기관이 21개의 우수사례를 제안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서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울산과기원(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 생기원(연구윤리 교육홍보), 한양대(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기계연(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고려대(연구윤리 교육홍보) 등 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공유방안 모색이 검토될 필요 있음
- 주요국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검토 및 국내 연구개발 관련 부처의 부정행위 조사·검증 규정과 당사자 권리 보호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부정행위의 검증 등(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57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의 주체를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은 조사과정의 자문 및 결과 판정에 대한 검토를 담당
 -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OSTP)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연방기관의 전담 부서에서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있음.(예)보건복지부의 경우 독립된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운영, 연방과학재단의 경우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운영)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진실성 정책 전담 기관은 없으나 연구기관에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독일연구재단(DFG)이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권고안」 제시 및 옴부즈만 제도 운영
 - 호주의 경우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 산하에 연구진실성검토위원회(Research Integrity Review Committee, RIRC)와 호주연구진실성위원회(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ARIC)를 두고 있으며, 연구진실성 문화 증진방안 등에 대한 조언 및 부정행위 사건의 처리를 담당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검증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사·검증 및 판정 등 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연구현장의 실무 수행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관례로 교육부 및 산업부 지침에서 명시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등과 같이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등도 강조될 필요 있음
- 국제 사회는 연구의 무결성 확보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싱가포르(2010)와 캐나다(2013)에서 개최된 세계학술대회 성명서 및 유럽 아카데미 연합의 “연구 무결성을 위한 유럽 행동강령” 발표 등을 통해 연구 진실성과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정직성과 공정성, 연구자의 책임성과 사회적 의무 등에 대한 자율적 공통 규범 마련을 위한 노력 진행
 - 특히 OECD의 경우 글로벌 연구생태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 협력 연구에서 연구 보안에 대한 고려 요소를 국가와 기관차원에서의 연구진실성 프레임워크에서 통합하여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른 기술 탈취 시도 및 유출과 관련하여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
 - 한편 부실학회 및 학술지 등 연구자의 도덕적 일탈에 기인한 연구윤리 이슈와 관련해서 연구현장의 자정작용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연구윤리 관련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윤리 문화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연구결과의 활용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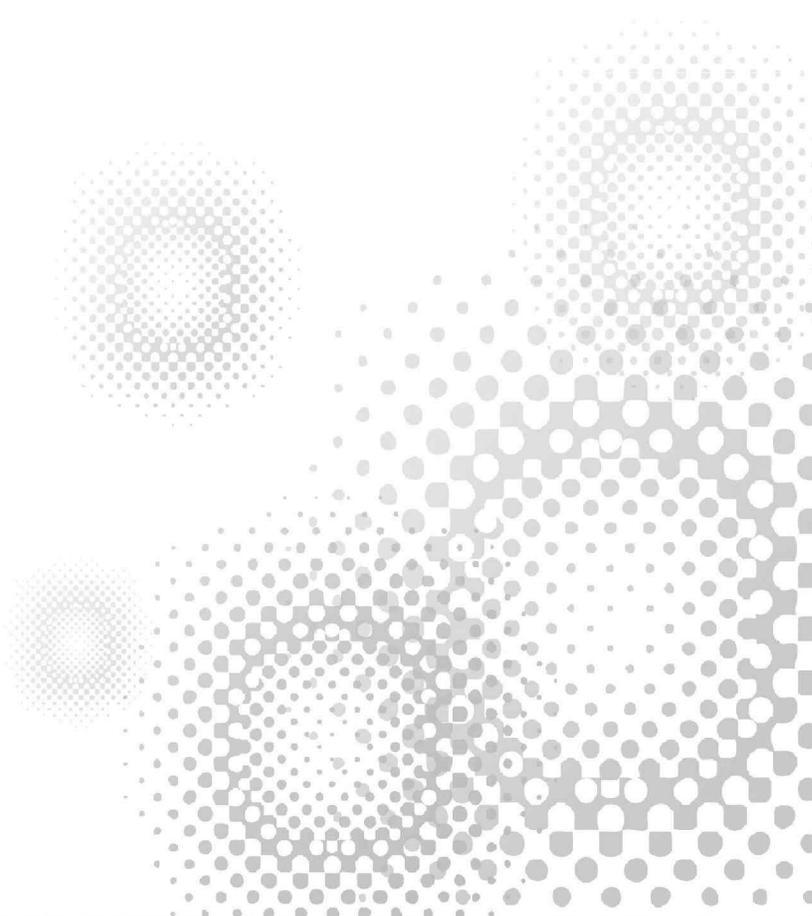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 환경 변화와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산·학·연 연구 주체들의 연구윤리 확보 체계 마련 및 연구현장의 자정 작용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방지·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연구윤리 범주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연구윤리 공통 규범과 기준, 예시 규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및 연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와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기관 조사·검증의 공정성 확보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정행위 검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안) 마련 등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자체적인 연구윤리 규정마련·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이슈 발굴 등을 통해 현장 기반의 실질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으로 발전
- 연구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현장 활용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부 록

1. 연구윤리 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서식

2023.12.14



연구윤리 현황조사 응답 결과(표)

1. 연구윤리 확보 지원 현황

1-1. ① 연구윤리 전담 부서 운영 여부

항목별 전담 부서 운영 기관 (%, 개)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104개	
	72개		32개		23개		7개		2개		104개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97.2% (70개)	2.8% (2개)	100% (32개)	0% (0개)	100% (23개)	0% (0개)	100% (7개)	0% (0개)	100% (2개)	0% (0개)	98.1% (102개)	1.9% (2개)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80.6% (58개)	19.4% (14개)	100% (32개)	0% (0개)	100% (23개)	0% (0개)	100% (7개)	0% (0개)	100% (2개)	0% (0개)	86.5% (90개)	13.5% (14개)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81.9% (59개)	18.1% (13개)	100% (32개)	0% (0개)	100% (23개)	0% (0개)	100% (7개)	0% (0개)	100% (2개)	0% (0개)	87.5% (91개)	12.5% (13개)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95.8% (69개)	4.2% (3개)	87.5% (28개)	12.5% (4개)	87.0% (20개)	13.0% (3개)	85.7% (6개)	14.3% (1개)	100% (2개)	0% (0개)	93.3% (97개)	6.7% (7개)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81.9% (59개)	18.1% (13개)	96.9% (31개)	3.1% (1개)	95.7% (22개)	4.3% (1개)	100% (7개)	0% (0개)	100% (2개)	0% (0개)	86.5% (90개)	13.5% (14개)
⑥ 연구윤리 교육	97.2% (70개)	2.8% (2개)	100% (32개)	0% (0개)	100% (23개)	0% (0개)	100% (7개)	0% (0개)	100% (2개)	0% (0개)	98.1% (102개)	1.9% (2개)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77.8% (56개)	22.2% (16개)	93.8% (30개)	6.2% (2개)	95.7% (22개)	4.3% (1개)	100% (7개)	0% (0개)	50.0% (1개)	50.0% (1개)	82.7% (86개)	17.3% (18개)

1-1. ② 연구윤리 전담 부서 개수

※ 부서가 없는 기관도 평균값 계산시 포함함

항목별 전담 부서 수 평균 및 최대 부서 수(개)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104개	
	72개		32개		23개		7개		2개		104개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1.10	3.00	1.03	2.00	1.04	2.00	1.00	1.00	1.00	1.00	1.08	3.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0.94	3.00	1.28	3.00	1.30	2.00	1.29	3.00	1.00	1.00	1.05	3.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0.90	2.00	1.09	2.00	1.09	2.00	1.14	2.00	1.00	1.00	0.96	2.0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1.17	4.00	1.00	2.00	0.91	2.00	1.29	2.00	1.00	1.00	1.12	4.0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0.94	3.00	1.13	3.00	1.00	2.00	1.57	3.00	1.00	1.00	1.00	3.00
⑥ 연구윤리 교육	1.22	4.00	1.06	2.00	1.04	2.00	1.14	2.00	1.00	1.00	1.17	4.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0.85	2.00	0.94	1.00	0.96	1.00	1.00	1.00	0.50	1.00	0.88	2.0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1-1. ②-(1) 연구윤리 전담 부서 개수 - 연구비 규모별 - 대학

항목별 전담 부서 수 평균 및 최대 부서 수(개)	1,000억 이상 (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7개		6개		59개		72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1.00	1.00	1.50	3.00	1.07	3.00	1.19	3.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1.00	2.00	1.33	3.00	0.90	2.00	1.08	3.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0.71	1.00	1.33	2.00	0.88	2.00	0.98	2.0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1.29	3.00	1.83	4.00	1.08	2.00	1.40	4.0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1.00	2.00	1.17	3.00	0.92	2.00	1.03	3.00
⑥ 연구윤리 교육	1.29	3.00	1.67	4.00	1.17	3.00	1.37	4.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1.00	1.00	0.67	1.00	0.85	2.00	0.84	2.00

1-1. ②-(2) 연구윤리 전담 부서 개수 - 연구비 규모별 - 출연연

항목별 전담 부서 수 평균 및 최대 부서 수(개)	1,000억 이상 (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15개		6개		2개		23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1.07	2.00	1.00	1.00	1.00	1.00	1.02	2.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1.33	2.00	1.33	2.00	1.00	1.00	1.22	2.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1.13	2.00	1.00	1.00	1.00	1.00	1.04	2.0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0.87	1.00	1.00	2.00	1.00	1.00	0.96	2.0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1.00	2.00	1.00	1.00	1.00	1.00	1.00	2.00
⑥ 연구윤리 교육	1.07	2.00	1.00	1.00	1.00	1.00	1.02	2.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1.00	1.00	0.83	1.00	1.00	1.00	0.94	1.00

1-1. ②-(3) 연구윤리 전담 부서 개수 - 연구비 규모별 - 특정연

항목별 전담 부서 수 평균 및 최대 부서 수(개)	1,000억 이상 (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3개		1개		3개		7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1.67	3.00	1.00	1.00	1.00	1.00	1.22	3.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1.33	2.00	1.00	1.00	1.00	1.00	1.11	2.0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1.33	2.00	2.00	2.00	1.00	2.00	1.44	2.0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2.00	3.00	1.00	1.00	1.33	2.00	1.44	3.00
⑥ 연구윤리 교육	1.33	2.00	1.00	1.00	1.00	1.00	1.11	2.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 ②-④ 연구윤리 전담 부서 개수 - 연구비 규모별 - 전문연

항목별 전담 부서 수 평균 및 최대 부서 수(개)	1,000억 이상 (상)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0개		1개		1개		2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	-	1.00	1.00	1.00	1.00	1.00	1.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	1.00	1.00	1.00	1.00	1.00	1.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	-	1.00	1.00	1.00	1.00	1.00	1.0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	-	1.00	1.00	1.00	1.00	1.00	1.0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	1.00	1.00	1.00	1.00	1.00	1.00
⑥ 연구윤리 교육	-	-	1.00	1.00	1.00	1.00	1.00	1.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	-	1.00	1.00	0.00	0.00	0.50	1.00

1-1. ③ 연구윤리 전담 인력 현황

※ 인력이 없는 기관도 평균값 계산시 포함함

항목별 전담 인원 수 평균 및 최대 인원 수(명)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104개	
	72개		32개		23개		7개		2개		104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0.30	1.10	0.29	2.00	0.32	2.00	0.21	0.50	0.20	0.20	0.30	2.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0.24	2.00	0.30	1.00	0.35	1.00	0.17	0.30	0.20	0.20	0.26	2.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0.24	3.50	0.46	2.50	0.56	2.50	0.20	0.50	0.20	0.20	0.31	3.5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0.76	10.25	0.75	8.00	0.89	8.00	0.45	1.00	0.20	0.20	0.76	10.25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0.32	3.50	0.39	2.50	0.41	2.50	0.39	1.35	0.20	0.20	0.34	3.50
⑥ 연구윤리 교육	0.34	3.00	0.26	1.00	0.26	1.00	0.25	0.80	0.25	0.30	0.32	3.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0.45	5.50	0.29	2.00	0.33	2.00	0.22	0.50	0.10	0.20	0.40	5.5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1-1. ③-(1) 연구윤리 전담 인력 현황 - 연구비 규모별 - 대학

항목별 전담 인원 수 평균 및 최대 인원 수(명)	1,000억 이상 (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7개		7개		60개		74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0.46	1.00	0.48	1.10	0.27	1.00	0.30	1.1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0.33	1.00	0.16	0.36	0.23	2.00	0.24	2.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0.31	1.00	0.19	0.30	0.24	3.50	0.24	3.5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2.88	10.25	1.80	4.00	0.40	3.00	0.76	10.25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0.84	3.00	0.48	1.40	0.24	3.50	0.32	3.50
⑥ 연구윤리 교육	0.79	3.00	0.54	1.20	0.27	2.00	0.34	3.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1.66	5.50	0.15	0.40	0.34	2.00	0.45	5.50

1-1. ③-(2) 연구윤리 전담 인력 현황 - 연구비 규모별 - 출연연

항목별 전담 인원 수 평균 및 최대 인원 수(명)	1,000억 이상 (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15개		6개		2개		23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0.37	2.00	0.27	0.50	0.15	0.20	0.32	2.0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0.37	1.00	0.37	1.00	0.15	0.20	0.35	1.0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0.63	2.50	0.52	2.00	0.15	0.20	0.56	2.5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1.16	8.00	0.47	2.00	0.20	0.20	0.89	8.0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0.50	2.50	0.27	0.50	0.15	0.20	0.41	2.50
⑥ 연구윤리 교육	0.30	1.00	0.20	0.40	0.15	0.20	0.26	1.0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0.38	2.00	0.28	1.00	0.15	0.20	0.33	2.00

1-1. ③-(3) 연구윤리 전담 인력 현황 - 연구비 규모별 - 특정연

항목별 전담 인원 수 평균 및 최대 인원 수(명)	1,000억 이상 (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3개		1개		3개		7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0.12	0.17	0.50	0.50	0.20	0.30	0.21	0.5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0.17	0.30	0.20	0.20	0.17	0.30	0.17	0.3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0.14	0.20	0.20	0.20	0.27	0.50	0.20	0.5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0.68	1.00	0.70	0.70	0.13	0.30	0.45	1.0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0.57	1.35	0.50	0.50	0.17	0.30	0.39	1.35
⑥ 연구윤리 교육	0.33	0.80	0.20	0.20	0.20	0.30	0.25	0.8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0.14	0.20	0.50	0.50	0.20	0.30	0.22	0.50

1-1. ③-④ 연구윤리 전담 인력 현황 - 연구비 규모별 - 전문연

항목별 전담 인원 수 평균 및 최대 인원 수(명)	1,000억 이상 (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중)		500억 미만 (하)		총계	
	0개		1개		1개		2개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	-	0.20	0.20	0.20	0.20	0.20	0.20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	0.20	0.20	0.20	0.20	0.20	0.20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	-	0.20	0.20	0.20	0.20	0.20	0.20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	-	0.20	0.20	0.20	0.20	0.20	0.20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	0.20	0.20	0.20	0.20	0.20	0.20
⑥ 연구윤리 교육	-	-	0.20	0.20	0.30	0.30	0.25	0.30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	-	0.20	0.20	0.00	0.00	0.10	0.20

1-2.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현황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72개	32개	23개	7개	2개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93.1% (67개)	100% (32개)	100% (23개)	100% (7개)	100% (2개)	95.2% (99개)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52.8% (38개)	93.8% (30개)	100% (23개)	71.4% (5개)	100% (2개)	65.4% (68개)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68.1% (49개)	96.9% (31개)	95.7% (22개)	100% (7개)	100% (2개)	76.9% (80개)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87.5% (63개)	90.6% (29개)	91.3% (21개)	85.7% (6개)	100% (2개)	88.5% (92개)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8.1% (49개)	100% (32개)	100% (23개)	100% (7개)	100% (2개)	77.9% (81개)
⑥ 연구윤리 교육	77.8% (56개)	96.9% (31개)	95.7% (22개)	100% (7개)	100% (2개)	83.7% (87개)

2.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현황

2-1. 부정행위의 범위 자체구정의 마련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반영했다고 응답한 비율(%)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72개	32개	23개	7개	2개	104개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적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88.9% (64개)	100% (32개)	100% (23개)	100% (7개)	100% (2개)	92.3% (96개)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50.0% (36개)	93.8% (30개)	95.7% (22개)	85.7% (6개)	100% (2개)	63.5% (66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적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5.8% (33개)	93.8% (30개)	95.7% (22개)	85.7% (6개)	100% (2개)	60.6% (63개)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요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7.2% (34개)	93.8% (30개)	95.7% (22개)	85.7% (6개)	100% (2개)	61.5% (64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0.0% (36개)	93.8% (30개)	95.7% (22개)	85.7% (6개)	100% (2개)	63.5% (66개)

2-1. 부정행위의 범위 자체구정의 마련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반영했다고 응답한 비율(%)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72개	32개	23개	7개	2개	104개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	75.0% (54개)	90.6% (29개)	87.0% (20개)	100% (7개)	100% (2개)	79.8% (83개)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56.9% (41개)	81.3% (26개)	82.6% (19개)	71.4% (5개)	100% (2개)	64.4% (67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38.9% (28개)	65.6% (21개)	65.2% (15개)	57.1% (4개)	100% (2개)	47.1% (49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47.2% (34개)	75.0% (24개)	78.3% (18개)	57.1% (4개)	100% (2개)	55.8% (58개)

2-2.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구정의 마련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필수 포함 사항

반영했다고 응답한 비율(%)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72개	32개	23개	7개	2개	104개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93.1% (67개)	100% (32개)	100% (23개)	100% (7개)	100% (2개)	95.2% (99개)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94.4% (68개)	100% (32개)	100% (23개)	100% (7개)	100% (2개)	96.2% (100개)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94.4% (68개)	100% (32개)	100% (23개)	100% (7개)	100% (2개)	96.2% (100개)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94.4% (68개)	100% (32개)	100% (23개)	100% (7개)	100% (2개)	96.2% (100개)
* 보안 대책 위반 및 보안사항 누설 및 유출	75.0% (54개)	96.9% (31개)	95.7% (22개)	100% (7개)	100% (2개)	81.7% (85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제1항 각호에는 없는 내용이나, 본 조사에서 추가로 질문함

3.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022년 5월 개정본) 활용 여부

활용했다고 응답한 비율(%)	학	연				총계
	대학	전체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72개	32개	23개	7개	2개	
기관의 정책수립에 활용	84.7% (61개)	90.6% (29개)	91.3% (21개)	100% (7개)	50.0% (1개)	86.5% (90개)
현장 실무에 활용	70.8% (51개)	93.8% (30개)	100% (23개)	85.7% (6개)	50.0% (1개)	77.9% (81개)

조사 응답 기관 목록

연번	기관 유형	기관명
1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2	대학	가톨릭대학교
3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4	대학	경북과학대학교
5	대학	경북대학교
6	대학	경상국립대학교
7	대학	경성대학교
8	대학	경운대학교
9	대학	고려대학교
10	대학	고신대학교
11	대학	공주대학교
12	대학	광운대학교
13	대학	광주교육대학교
14	대학	국립금오공과대학교
15	대학	군산대학교
16	대학	농협대학교
17	대학	대구대학교
18	대학	대진대학교
19	대학	덕성여자대학교
20	대학	동명대학교
21	대학	동의대학교
22	대학	목포대학교
23	대학	부경대학교
24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25	대학	부산장신대학교
26	대학	북한대학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27	대학	상명대학교
28	대학	서강대학교
29	대학	서경대학교
30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1	대학	서울교육대학교
32	대학	서울신학대학교
33	대학	서울여자대학교
34	대학	선문대학교
35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36	대학	승실사이버대학교
37	대학	신라대학교
38	대학	인양대학교
39	대학	연세대학교
40	대학	오산대학교
41	대학	우석대학교
42	대학	울산과학대학교
43	대학	울산대학교
44	대학	을지대학교
45	대학	이화여자대학교
46	대학	인제대학교
47	대학	인천재능대학교
48	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49	대학	전남대학교
50	대학	전주대학교
51	대학	제주한라대학교
52	대학	조선대학교
53	대학	중앙대학교
54	대학	진주교육대학교
55	대학	차의과학대학교
56	대학	청운대학교
57	대학	청주교육대학교
58	대학	청주대학교
59	대학	충북대학교
60	대학	포항공과대학교
61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2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3	대학	한국복지대학교
64	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65	대학	한국체육대학교

66	대학	한국해양대학교
67	대학	한동대학교
68	대학	한림대학교
69	대학	한신대학교
70	대학	한양대학교
71	대학	한양사이버대학교
72	대학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73	전문연	한국광기술원
74	전문연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75	출연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6	출연연	극지연구소
77	출연연	녹색기술센터
78	출연연	세계김치연구소
79	출연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0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1	출연연	한국기계연구원
82	출연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3	출연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4	출연연	한국식품연구원
85	출연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6	출연연	한국원자력연구원
87	출연연	한국재료연구원
88	출연연	한국전기연구원
89	출연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0	출연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1	출연연	한국천문연구원
92	출연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3	출연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4	출연연	한국한의학연구원
95	출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6	출연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97	출연연	한국화학연구원
98	특정연	광주과학기술원
99	특정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00	특정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1	특정연	울산과학기술원
102	특정연	한국과학기술원
103	특정연	한국기초과학연구원
104	특정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조사 서식

※ 조사 서식은 엑셀파일(xlsx) 형태로 제공되었음

구분

대학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 기타

① 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② 제출 담당자 정보

성명			
직책		부서명	
직통번호		이메일	

③ 연구윤리 확보 지원 현황 사례 조사

-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관련하여 마련, 운영 중인 규정 사례 및 지원체계·절차 등의 사례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윤리 길잡이 보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연구기관별 사례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확산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따라 각 항목별 현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윤리 확보 지원 현황

1-1. 연구윤리 전담 부서/인력 현황

분야 구분	담당 부서	담당 인력(명)*	담당 역할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⑥ 연구윤리 교육			
⑦ 연구윤리 총괄/전담 ※ 기관 내 연구윤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 기재			

※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부서가 2곳 이상인 경우 각 부서별로 기재(분야 내 줄(칸) 추가)

* 연구윤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연구윤리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소수점으로 표기

1-2.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현황

연구윤리 영역*	자체 규정 (○/X)	자체 규정 명칭**	비고***	첨부****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첨부파일 순번 (예시: 1-2-1)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⑥ 연구윤리 교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항(필요 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2.5) 참조)

**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각 규정 내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마련 중이거나 개정 중인 경우 예상되는 시행 시점 등 자체 규정의 마련 현황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이 있는 경우 원문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모두 신기 어려운 경우 출처를 표기한 원문의 일부분 첨부 가능)

2. 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 운영 현황

2-1. 부정행위의 범위

혁신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반영 여부 (○/X)	내규 조항*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반영 여부 (○/X)	내규 조항*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신문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관련 내규명과 조문을 기재, 복수인 경우 복수 기재

※ 해당 조문을 포함한 관련 내규를 별첨

2-2.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마련 현황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필수 포함 사항	마련 여부 (○/X)	내규 조항*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보안 대책 위반 및 보안사항 누설 및 유출		

* 관련 내규명과 조문을 기재, 복수인 경우 복수 기재

※ 해당 조문을 포함한 관련 내규를 별첨

3.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22.5)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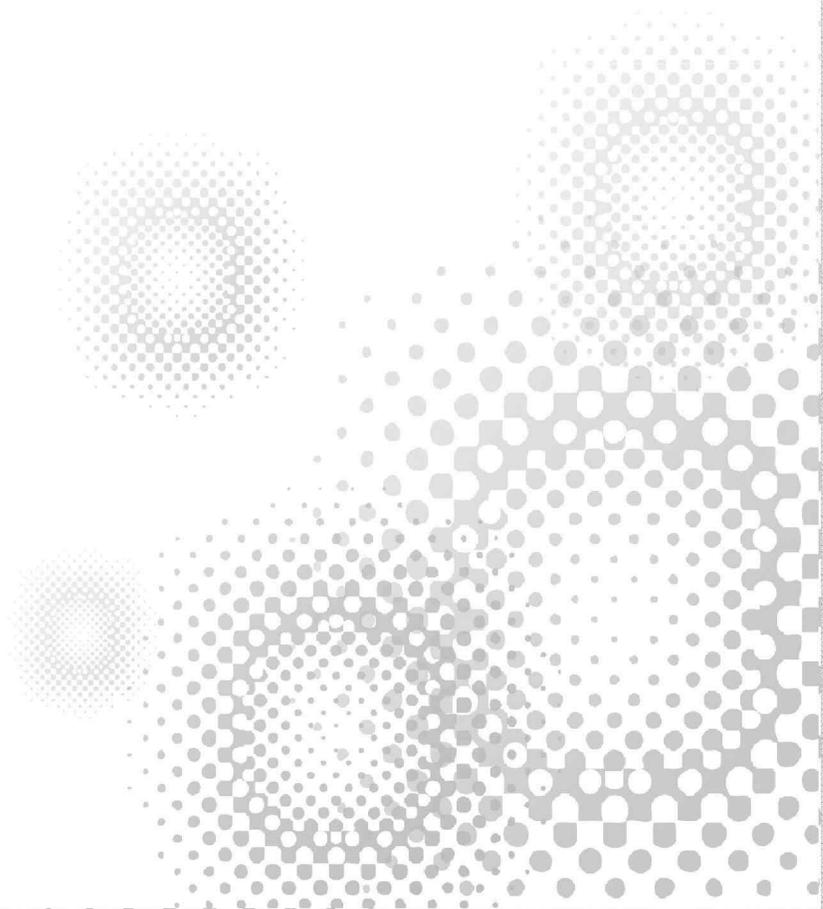
활용분야	내용
1) 기관의 정책수립에 활용	(예시) 연구윤리 지원체계(조직, 역할 체계 등) 마련에 활용, 자체 규정 등의 마련·운영에 활용
2) 현장 실무에 활용	(예시) 연구윤리 담당자 학습·교육,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홍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부 록



2. 연구윤리 우수사례 조사 서식 및 사례



우수사례 조사 서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기관 혹은 연구부서 단위에서 마련·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추천·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주신 우수사례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에 활용하고자 하며 우수사례 심사를 거쳐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연구윤리 우수사례 도출·운영 등에 기여한 개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여 등 정부 포상을 추진하고자 함
(우수사례 선정 후 포상은 성과평가 유공 포상계획에 따라 별도 추진)

- 연구기관이 일괄 취합하여 제출 ([서식3-1]의 우수사례 제안서는 후보자가 작성)
- 아래 추천 분야 중 우수사례를 최대 5개까지 추천 가능 (동일 분야의 경우 2개 이내)

〈예시〉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2건,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2건,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1건

〈 추천 분야〉

-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 ⑦ 기타

□ 연구윤리 우수사례 추천 목록

추천 분야	우수사례명	주요 내용	추천 순위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연구윤리 교육·홍보			
기타			

연구윤리 우수사례 제안서

우수사례	우수사례명	※우수사례별 작성		
	관련 분야 (택 1)	①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③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⑤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⑥ 연구윤리 교육·홍보 ⑦ 기타		
	주요 내용 요약	※우수사례 주요 내용은 별지 작성		
담당자	성 명		소속 부서	
			직위/직급	
	전 화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참고사항	1. 연구기관이 제안한 우수사례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및 연구윤리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음 2. 연구기관이 제시한 우수사례는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선정 3. 우수사례 제안서 심사를 위해 제안서에 언급된 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요망			

연구윤리 확보 지원 우수사례

※ 3~5p 이내로 작성하되 주요 성과의 세부내용(예: 규정 조문, 지침(안), 교육자료, 활동자료, 홍보물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추진 배경 및 목적

○

-

 추진 과정 및 내용

○

-

 주요 성과

○

-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평가표

I. 심사대상

분야	
기관명	사례명

II. 심사내용

심사지표	심사내용	배점	점수
연구자 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는 등 소속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 	30점	
적극성 · 창의성 ·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를 평가 	30점	
중요도 및 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을 평가 	20점	
확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례에서 나타난 노력이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20점	
총점		100점	

[종합의견]

상기와 같이 심사함.

2022.12.14

소속/직위 :

성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중

우수사례 요약

1. 연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금지 캠페인 진행(울산과학기술원)

□ 추진배경

대학 내 증가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은 연구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자체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환경이 갖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함

□ 추진내용

자체실태조사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유용금지에 관한 인식도 확인 및 관련 애로사항 파악, 기타 연구환경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자체실태조사 주요 결과

(공동인건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에 대한 공동인건비 관리*의 개념,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족,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를 위하여 원 내에서 실행중인 여러 조치 내용 인식 부족

(랩비조성) 랩비조성을 강요받거나, 목격 한 경우 공식적인 신고채널 인식 부족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통한 공동관리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여 연구실 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로서, 조성목적과 상관없이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불법: 연구비 횡령) 적발 시 연구비 환수,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후속 조치

(연구윤리 의식개선 캠페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에 관한 캠페인 진행

(캠페인 주요 내용)

- 대학 내 주요시설에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홍보배너 비치 완료(출입구, 인원 밀집 공간에 집중비치)
-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문화정착을 위하여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전파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통한 공동관리(랩비조성)금지 관련 세부내용 및 공식 신고채널 홍보 등 주요자료를 제작 및 배포(연구처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개시, 전구성원 공문 전파)

□ 주요 성과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자체실태조사를 통한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분석 → 학생 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캠페인을 실시 →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에 기여

(전 구성원 올바른 연구윤리 의식개선)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에 대한 개념 및 학생 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안내 자료 전파 → 전 구성원 올바른 연구윤리 의식개선에 기여

(연구자의 권익 침해 예방 및 대응) 연구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담창구 적극 홍보로, 접근성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붙임자료]

□ 자체실태조사 세부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역
자체실태조사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개별 심층면담 실시
결과분석	연구현장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캠페인 실시	홍보배너 설치 완료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주요 자료 원내 전파 완료

□ 학생연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 및 결과

- 조사대상 : 소속 학생연구원 전체(재학생)
- 설문 결과 : 응답자 학생의 대부분인 92%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94%가 연구실 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이뤄지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는 모른다고 응답

□ 연구관리팀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를 위한 조치 알림

1. 메일링 서비스 : 학생인건비 과다 등록 시 공동관리 금지를 위한 자동 안내 메일 발송
2. 포털 메뉴에서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조회 시 공동관리 금지사항 안내
3. 참여확약서 상에 공동관리 금지에 관한 확약사항 명기
4. 학생인건비 승인 시 공동관리 금지사항 관련 팝업 안내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면담 실시
6.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공포

□ 공식적인 신고채널 활용 요청

1. 클린신고센터: clean.unist.ac.kr
2. 연구처 부적정 집행신고: research.unist.ac.kr
3. 청렴우체통 학내 주요 지점 비치

2. 연구자의 연구윤리 Master 제도 운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추진배경

내부 연구윤리 담당자 1인 중심의 연구윤리 업무 추진은 모든 지역을 다루기에는 물리적 한계점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분산체제(3연구소/7본부)에 따른 한계점을 보완하고 각 연구소·본부별 연구윤리 가교(연결) 역할을 담당하며, 기관 연구윤리 부정행위 사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 연구윤리 Master 육성 필요

□ 추진내용

추진 체계 및 역할

사업운영평가실이 전체 연구원 연구윤리를 총괄하며, 연구윤리 관련 전반적인 계획·제도 수립하고 연구윤리 Master의 육성 담당. 연구윤리 Master는 연구소·본부의 Contact Point가 되며, 지역별 소규모 연구윤리 교육·상담 등을 수행

Master의 지위 및 주요 임무

(임기) 연구윤리 Master의 임기는 2년으로 추진하여 일선 연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의 Master를 순환 담당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참여 및 저변 확대

(보수교육) 매년 1회 연구윤리 Master 대상 보수교육 실시하여 연구윤리 Master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연구윤리 관련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워크숍 형태의 보수 교육(연구소·본부별 연구윤리 이슈사항 토론, 연구윤리 관련 사례·규정 교육) 실시

(교육·상담 및 지원) 매 분기마다 3~5명 인원을 모아서 연구윤리 교육하는 ‘삼삼오오(三三五五) 프로젝트’ 추진

- 연구윤리 Master는 매 분기마다 3~5명의 동료들을 모아서 연구윤리 교육·상담 진행 (연 4회)
- 해당 시간에는 연구윤리 교육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관련 고민사항·궁금점 등을 자유롭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캐주얼한 시간으로 진행
- 교육자료는 사업운영평가실에서 제공하며, Master는 교육 완료 후 간단한 교육 결과보고 작성 후, 사업운영평가실 담당자에게 송부

□ 주요 성과

(연구자 중심의 실천하는 연구윤리 달성)

- 연구윤리 Master를 통해, 이론 관리중심의 연구윤리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연구윤리 관련 노출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여 실생활 속에서의 실천하는 연구윤리 도모

(효율적인 연구윤리 체계 마련)

-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산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앙 ↔ 지역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Synergy) 형성 및 효율적인 연구윤리 체계 마련

3. 한양대학교 특수관계인 신고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한양대학교)

□ 추진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전 신고 제도 등 절차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논문, 학술발표, 연구과제참여 이외에 특허 등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 제기

□ 추진내용

TFT 구성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에 대해서 연구윤리부서가 아닌 연구관련 전체 부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관부서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고 이외에도 정보통신처, 교무팀과 더불어 신고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신고제도 등 절차 정비

(대학 포털 신고시스템 구축) 회의를 통해서 대학의 포털 내에 신고 시스템 화면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공문 송부 등)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양한 교내 연구시스템과 연동하여 신고) 특히 연구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의 신고를 인지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 연구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1) 업적평가를 위한 성과 입력 시, 2) 연구과제 신고 시, 3) 특허 발명 신고 시에도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에 대한안내 문구와 더불어바로 신고시스템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음

(특수관계인 신고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손쉽게 정리한 특수관계인 신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연구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신고프로세스 홍보 및 안내) 각종 연구자 대상 교육, 교원 연수회, 공문 등을 통해서 신고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특히 특수관계인 이외에도 IRB, IACUC, 직무발명, 교원 창업 겸직 등 연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신고를 목록화하여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성과

(시스템과 매뉴얼 정착) 손쉬운 시스템과 매뉴얼, 그리고 홍보로 매년 수십건의 연구참여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음

(연구윤리 문제 체계적 대응) 연구자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신고한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전산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함. 또한 논문, 학술발표, 연구과제, 특허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참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모범사례 벤치마킹 제공) 연구참여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대학이 있는 경우 우리대학교의 사례가 벤치마킹 가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한국기계연구원)

□ 추진배경

종전의 연구진실성, 연구부정 대응에 국한되었던 연구윤리 개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개념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음. 달라진 연구윤리 개념에 대한 안내 및 연구윤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

□ 추진내용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2.05. 개정본)」 적극 활용

그간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단순 게시함. 게시판 단순 게시를 지양하고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2.05.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발췌편집하고 연구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연구자의 활용도 제고

□ 주요 성과

(연구윤리 관련 연구자의 이해와 편의 제고)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원칙들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하여 연구자의 이해도와 편의성 제고

(사전예방적 연구윤리 실천체계 고도화) 전직원의 윤리 공감대 형성 및 연구윤리 실천체계 수립

5.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대학원 학칙 개정, 교과목 개설 및 비교과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시스템 마련 (고려대학교)

□ 추진배경

예비 연구자이자 연구의 주체인 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졸업요건을 강화하고 연구윤리교육의 학내 커리큘럼 필요성 제기됨.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및 다양한 국적의 외국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연구윤리교육 필요

□ 추진내용

연구윤리교육 제도화

일반대학원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의무 시행안 마련, 일반 공통 교과목 개설(한국어, 영어 반 개설),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시스템 개선

□ 주요 성과

(학칙 개정) 연구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학칙 개정하고 모든 대학원생이 연구윤리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여 졸업요건도 강화

(교과·비교과 연구윤리교육) 모든 신입생들을 위한 정규 교과목 개설하여 이공계열, 의학계열, 인문계열 등 세분화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함. 또한 비교과 온라인 연구윤리교육도 제공

(비대면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비대면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연구윤리교육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없이 제공

(외국어 연구윤리교육) 타국적의 외국학생들을 위한 영어 연구윤리교육 제공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개정 2016. 3. 4.)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2.04.15.),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국회입법조사처(2019.10.11.)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2020),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연구재단(2021.4),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22. 1. 18.)

한국연구재단(2020),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한국연구재단(2019),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대응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요령(개정 2022. 3.29.)

[해외 문헌]

ALLEA (2017),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APEC (2022) APEC Guiding Principles for Research Integrity

ARIC (2018)“Guide to Managing and Investigating Potential Breaches of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ARIC (2019), “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ARIC) Request for Review”

Journal of Medicine 329: 573-6.

Montreal Statement (2013), Montreal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in Cross-Boundary Research Collaborations.

NSF(2020) “OIG procedure for Misconduct Investigation”

NSF (2020), “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 Chapter XII - Grant Administration Disputes and Misconduct”

OECD. (2005)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OECD (2022), Integrity and Security in the global research ecosystem

OECD Global Science Forum (2009.04), Investigating Research Misconduct Allegations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OSTP (2020.06), Enhanc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America’s Research Enterprise

OSTP (2021.08), Clear Rules for Research Security and Researcher Responsibility

Scientific Integrity Task Force (2022.01) 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

Singapore Statement (2010),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Thompson, Dennis F. (1993) “Understand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New England

The White House, 2021.01.27., Memorandum on Restoring Trust in Government Through Scientific Integrity and Evidence-Based Policymaking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 (2022.03),《关于加强科技伦理治理的意见》

《求是》杂志 (2022.10.17.), 王志刚:完善科技伦理治理体系保障科技创新健康发展

[웹사이트]

〈<https://m.segye.com/view/20190522512276>〉

〈https://www.cre.or.kr/bbs/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2&pageIndex=1〉

〈<https://wissenschaftliche-integritaet.de/en/dfg-procedure-in-cases-of-suspected-scientific-misconduct/>〉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0715/72496233/2>〉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